

政策協議會시리즈20
1984. 6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리말

정부에서는 “農村地域에 工業 및 서비스產業을 유치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을 促進함으로써 農漁村所得을 증대하고 所得構造를 高度化하여 農漁村經濟의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法律 第3689號, 1983.12)과 同施行令을 제정하고 農工地區를 중심으로 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 책자는 農村工業開發政策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 本 研究院이 주최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을 위한 政策協議會」에 발표된 主題論文과 討議內容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經濟企劃院, 農水產部, 商工部 등 중앙관계부처와 各道의 企劃官 및 기타 관계단체와 연구기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政策協議會에서는 農漁村所得增大施策의 方向과 政策의 推進背景 및 基本方針에 대한 설명과 함께 農漁村所得開發政策의 課題에 대한 주제발표와 討議가 있었다. 특히 이번 討議에서는 農工地區指定 및 造成에 대한 地方政府의 애로사항과 農工地區의 規模, 入住業體, 工場誘致, 中央政府 支援의 範圍와 限界 및 行政支援體系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農工地區造成事業 담당실무자에 대한 農村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農村工業開發의 必要性과 그 推進方法에 대한 教育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農漁村所得源開發施策의 推進過程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명료하게 지적된 이번 政策協議會의 결과를 정리한 이 資料가 정부의 政策方向樹立 및 관계기관의 行政實務에 참고가 되기를 기원한다.

1984. 7.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빈

면

目 次

마리말

主題發表

農漁村 所得增大施策의 方向	金漢坤	1
農漁村所得源 開發政策의 推進背景과 基本方針	金英泰	11
農漁村 所得源開發의 政策課題	崔洋夫 · 李桐弼	18
討議內容		71

附 錄

1. 農漁村 所得源開發促進法	103
2. 農漁村 所得源開發促進法 施行令	111
3. 開會辭	119
4. 參席者名單	121

빈
면

農漁村 所得增大施策의 方向

農外所得增大施策을 中心으로

金 漢 坤

(農水產部 農業政策局長)

I. 農家所得의 現況

農家所得은 農業粗收入에서 經營費를 제외한 農業所得과 憨業소득, 勞賃·給料 및 기타 財產 被贈收入으로 이루어지는 農外所得으로 構成되어 있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年末 現在 農家所得은 5,128千원이며, 그중 農業所得은 3,331千원으로 65%, 農外所得은 1,797千원으로서 35%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우리와 비슷한 營農規模를 가진 日本이나 臺灣과 比較해 보면 日本은 81%('82), 臺灣은 65%('82)로서 우리나라의 農外所得은 낮은 수準에 머물러 있다.

또한 農家의 所得을 耕地規模別로 보면 小農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은 작고, 農外所得의 比重이 크며 大農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크고, 農外所得은 그 比重이 작아진다.

表1 年度別 農家所得의 現況

單位 : 천원, %

區 分	1970	1975	1977	1980	1981	1982	1983
農 家 所 得	256	873	1,433	2,693	3,688	4,465	5,128
農 業 所 得	194	715	1,036	1,755	2,477	3,031	3,331
農 外 所 得	62	158	397	938	1,211	1,434	1,797
農 外 所 得 比 率	24.2	18.1	27.7	34.8	32.8	32.1	35.0

表 2 耕地規模別 農家所得構成, 1983

단위, %

區 分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 外 所 得			
			合 計	兼業所得	事業外所得	移轉所得
0.5 ha未滿	100	37.6	62.4	7.6	31.9	22.9
0.5 ~ 1.0	100	57.5	42.5	3.4	18.9	20.2
1.0 ~ 1.5	100	70.3	29.7	2.5	10.3	16.9
0.5 ~ 2.0	100	74.2	25.8	3.3	7.4	15.1
2.0 ha以上	100	82.2	17.8	2.2	4.9	10.8
平 均	100	65.0	35.0	3.6	14.2	17.3

한편, 農外所得의 構成을 살펴보면 1983년의 경우 兼業所得 3.6%, 勞賃·給料 등 事業外所得이 14.2%, 送金 및 被贈補助 등 移轉收入이 17.3%로서 憨業소득의 비중이 相對的으로 작고, 事業外所得과 移轉收入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II. 農外所得의 低調要因

1. 工業開發의 地域的 偏重

日本과 臺灣에 있어서는 工業開發과 함께 農外所得中 勞賃收入이 차지하는 比率이 急速히 增加되었다. 이는 工業의 地方分散과 農村 道路交通網의 擴充으로 農民들이 食品加工工場, 纖維工場, 非金屬製品工場 등에서 쉽게 就業所得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는 이와 對照的으로 工業開發은 急速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農村地域의 農外所得比率은 이와 比例하여 增加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서울·釜山等 도시지역에 工業이 集中되어 있어서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農村의 就業機會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工業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理由로는 大都市에는 道路·通信·電氣·用水 등 社會間接資本과 銀行 등 金融機關이 잘 갖추어져 있고, 勞動力이 集中되어 있어 技能工 등 勞動人力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製品消費市場에 隣接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工業開發戰略이 内需產業보다는 輸出主導型產業의 育成이 있기 때문에 製品을 生산하여 輸出하기 便利한 大都市附近, 高速道路 및 港灣 등에 工場이 集中 位置해 있다는 점도 農외소득이 저조한 理由中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 農村地域의 商業 및 서비스업의 未開發

農村地域의 商業 및 서비스업의 開發은 결국 農村工業이 育成되어야 하거나 現在 農村地域에 工業의 開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商業 및 서비스업은 規模面에서 너무 작고 零細해 農外所得增大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3. 產業技術情報 및 信用制度의 未備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정보나, 信用制度는 서울을 비롯한 釜山·大邱 등 대都市에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中小都市나 農村地域에는 開發이 未洽한 形便에 있어, 이것 또한 農村工業化의 重要한 豐路要因이 되고 있다.

4. 社會間接資本形成의 未備

우리 나라의 農村地域은 地方道路, 市郡道路의 포장률이 낮아 地方中心都市와 周邊農村地域과의 通勤圈의 擴大, 背後農村地域의 開發에 큰 支障을 주고 있으며, 通信, 工業用水, 電力 등 地方工業都市의 工業化에 必要한 立地與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農村地域이 發達하지 못한 原因이 되고 있다.

III. 農外所得 增大의 必要性

1. 農家所得源의 多樣化

우리 나라의 農家戶當 平均所得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3년 말 현재 5,128 千원으로서 그중 農外所得은 65 %이고 粗收入 기준으로 볼 때에도 農業所得의 47.8 %가 米麥에 依한 收入이므로 米麥所得이 偏重된 農業所得

表3 耕地規模別 農家戸數, 1983

單位: 千戸, %

區 分	0.5 ha未滿	0.5~1.0	1.0~1.5	1.5~2.0	2.0 ha以上	計
農家戸數	571.1	718.6	391.6	160.0	106.2	1,947.5
比 率	29.3	36.9	20.1	8.2	5.5	100.0

中心의 所得構造라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農家所得을 繼續的으로 增大시켜 나가려면 國民所得의 增大에 따라 消費가 계속 늘어나는 經濟作物, 畜產 등으로 所得源을 多樣화 시켜 나가면서 農外所得源도 계속적으로 開發시켜 나감으로써 農業所得을 지속적으로 向上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農業經營規模의 零細性

1983年度 戶當 平均耕地面積은 1.08 ha로서 이와 같은 耕地面積으로는 農業의 專業化가 어렵다. 耕地規模別 農家分布를 보면 平均耕地面積인 1 ha未滿의 農家 階層에 속하는 農家는 66.2 %이고, 農業所得으로서 家計費를 充足못하는 農家는 全體農家の 94.5 %程度나 되므로 農業所得以外의 農外所得源을 開發하여 나가야 한다.

3. 農業生產性 增大의 緩慢

農業部門의 GNP는 1950年代에는 年平均 2.1 %의 成長을 이루었지만, 非農業部門은 年平均 4.4 %의 成長을 이루하였다.

60年代에는 農業部門의 GNP成長率은 年平均 3.7 % 成長을 하였으나 非農業部門은 11.5 %를 成長하여 GNP는 8.7 %가 成長하였다.

한편 70年代에는 農業部門의 成長率은 年平均 0.9 %였으며 非農業部門은 10.5 % 成長을 하여 GNP成長은 年平均 8.2 %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農業部門의 成長이 저조한 것은 農業部門에 對한 投資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은 點도 있지만 臺灣이나 日本 등 外國의 사례를 보더라도 農業의 成長은 非農業部門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것이 一般的이다.

表 4 部門別 成長率

단위 : %

區 分	G N P	農 業	非 農 業
1953 ~ 61	3 . 6	2 . 1	4 . 4
1962 ~ 71	8 . 7	3 . 7	11 . 5
1972 ~ 80	8 . 7	0 . 9	10 . 5

그렇기 때문에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해서는 農業所得의 增大를 위한 持續的인 投資와 함께 農外所得源의 開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農產物 價格支持의 어려움

農業所得의 增大를 위해서 1960 年代 後半부터 1970 年代를 通하여 農產物 價格支持政策을 實施하여 왔다. 農產物中 米麥이 가장 重要한 作物이기 때문에 米麥價格의 上昇은 곧 農業所得의 增大로 나타났다.

그러나 米麥價格과 物價와는 밀접히 關聯되어 있어서 米麥價格上昇은 全般的인 物價上昇을 가져오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第 5 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안정위에 成長”의 경제체질을 다지기 위해서 政府는 物價安定을 제 1의 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農產物價格支持에 依한 農業所得의 보장은 어려운 形便에 있다.

5. 農村勞動力의 効率的인 活用

農家經濟調查報告 資料에 의하면, 82 年 현재의 경우 戶當平均 自家勞動力 投入이 6 月에 19.82 日로 되어 있다. 6 月이 最盛勞動需要期이기 때문에 19.82 日을 農家에서 動員可能한 總可用勞動力의 投入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自家勞動力의 季節別 失業率을 보면 <表 5>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月과 10 月의 勞動最盛需要期를 제외한 나머지 期間中에 農村에 農外活動을 할 수 있는 就業機會를 제공한다면 農民들은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表 5 自家勞動의 季節別 失業率

단위 : 환산일 수

區 分	自 家 勞 動			
	投 入 勞 動 (1)	最 盛 需 要 期 投 入 勞 動 (2)	季 節 失 業 (3) = (2) - (1)	季 節 失 業 率 (3) / (2) (%)
1982 . 1	7.30	19.82	12.52	63.2
2	8.07	19.82	11.75	59.3
3	10.77	19.82	9.05	45.6
4	12.09	19.82	7.73	39.0
5	14.95	19.82	4.87	24.6
6	19.82	[19.82]	0	0
7	15.13	19.82	4.69	23.7
8	13.95	19.82	5.87	29.6
9	14.82	19.82	5.00	25.2
10	18.71	19.82	1.11	5.6
11	8.86	19.82	10.96	55.3
12	6.65	19.82	13.17	66.4

IV. 農外所得 增大施策의 主要課題

農外所得增大施策의 推進은 農村地域의 工業立地의 不利 등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農村地域에의 工場誘致만으로는 어려우며 農村地域의 綜合的·均衡的 開發의 次元에서 다음과 같은 政策들이 同時に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農村의 下部構造의 開發擴充이다. 農村의 도로, 交通, 通信施設을 再整備 擴充하고 農村工業活動을 支援할 수 있는 租稅 및 金融서비스의 擴充과 流通·市場情報의 提供施設이 擴充되어야 한다.

둘째로 農民의 農外就業能力 培養이 必要하다.

農村工業의 育成이 農家所得增大로 連結되기 위해서는 農家構成員이 實제로 農村工場에 就業하여야 하며, 農民의 參與가 없는 農村工業은 農外所得 增大側面에서 전혀 無意味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農民이 工場에 就業할 수 있도록 農村技能人力의 배양 등 農村人力開發이 必要하다.

세째로는 農村地域에의 農村工業의 育成과 誘致가 必要하다.

農村地域의 中小企業을 育成하고 大企業의 育成 中小企業과의 系列化를 促進시켜야 하며, 기존의 大都市工場의 農村移轉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農家에서 通勤距離內에 小規模의 農村工業團地를 造成하여 企業의 費用을 덜어줌으로써 工場誘致를 促進시켜야 한다.

네째로는 農外就業을 위한 與件造成을 위하여 農業構造改善이 必要하다.

現在의 農業經營規模의 零細性을 그대로 두고 非農業部門을 계속 擴大發展시킨다면 兼業農의 大量生產으로 農業部門의 能率低下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耕地規模의 擴大를 위하여 協同的 營農組織과 農地制度를 檢討해볼 必要가 있다.

또한 農外就業으로 加重되는 農村勞動力의 不足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農業機械化事業 등이 補完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V. 農外所得增大施策의 推進現況과 方向

1. 農工地區의 造成

農外所得의 增大를 目的으로 그간에 추진하여온 農村工業 育成施策은 交通 등 立地與件을 고려하지 않은 立地選定, 技能人力의 確保, 資金不足 등의 問題點으로 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政府는 農村地域의 立地與件을 고려하여 1萬坪内外의 “農漁村地域工業開發促進地區” (略稱 農工地區)를 年内에 道別로 1개소씩 定하고 85年부터 여기에 道路, 通信, 電氣, 用水施設 등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여 農村工業화의 立地與件을 改善함으로써 農村工場誘致를 促進해 나갈 것이다.

表 6 產地 農水產物加工工場 建設計劃

區 分	1983	1984	1985	1986
工 場 建 設	6 (個所)	15	20	20
支 援 金 額	12 (億원)	34	42	42

2. 農水產物加工工場의 育成

農水產物加工業은一般的으로 農水產物을 原料로 使用하고 農漁村의 遊休勞動力を 活用하기 때문에 農漁村經濟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農水產物의 洪水 出荷時, 農水產物의 加工處理로 價格下落을 防止할 수 있는 有利한 點이 있는 反面, 原料生產의 季節性으로 原料供給이 제한됨으로써 年中稼動이 어려운 점 등 制約要素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複合加工形態로서 年中 稼動이 可能하고 農漁村 労動力의 吸收度가 커서 雇傭效果가 큰 業種을 對象으로 하여 農水產物의 主產地를 中心으로 農水產加工工場을 建設해 나갈 計劃이다.

83年에 처음으로 6個所를 建設하여 12億원을 支援한 바 있으며, 84年에는 15個所를 더 建設하여 34億원을 融資支援할 計劃이다.

3. 農漁村副業團地의 育成

農外所得은 農村工業 育成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農村工業化는 그 基盤을 外部로부터 導入해야 되므로 短期間內에 큰 成果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農村工業育成施策을 推進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傳統副業을 集團化하고 現代化하여 農家의 重要한 所得源이 되도록 하기 위한 農漁村副業의 育成도 必要하다.

그러나 農漁村의 副業製品은 大部分이 事業規模가 零細하며 獨自의 販賣能力 및 技術開發能力이 부족하다.

따라서 政府는 이러한 農漁村副業을 活性화하기 위하여 84.2월에 서울반포 뉴코아別館에 農家工產品販賣센터를 開場하고, 農漁村副業製品을

表 7 農漁村副業團地 事業計劃

區 分	1983	1984	1985	1986
團 地 指 定	340 (個)	463	560	660
支 援 金 額	70 (億원)	92	98	110

비롯한 農家工產品의 販路開拓과 技術開發指導 등 사업을 推進하고 있다.

農漁村副業團地事業은 83年에 340個副業團地에 70億원의 資金을 支援하였고 84年에는 400個所로 늘려, 92億원을 지원할 計劃이며 年次的으로 事業規模를 擴大해 나갈 計劃이다.

4. 觀光農業의 開發

觀光農業이란 農漁村地域에 快適하고 田園的인 休息空間을 造成하여 農水產物의 生產 및 加工販賣를 觀光資源化함으로써 늘어나는 都市化의 여가욕구를 農家所得과 연결시켜 보려는 特殊農業을 말한다.

觀光農業이 駐足하게 된 배경으로는 大氣污染 등 都市環境의 汚染으로 自然憧憬心理가 增加하고 있고, 所得增大에 따른 自由時間이 增大하며, 交通手段의 發達로 農村에의 接近이 점차 容易해지고 있다는 點과 中間流通費를 없애려는 農民의 慾求 등을 들 수 있다.

政府는 이러한 觀光農業開發事業을 通하여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目的으로 84年에 처음으로 11個所示範地區를 선정, 推進하고 있다.

示範地區에는 農園內의 生產附帶施設과 休息施設, 民泊施設 등을 支援해 주며, 地區別 事業費는 50백만원으로 하고 있다.

表 8 觀光農業開發 示範事業計劃

區 分	1984	1985	1986
示 範 地 區	11 (個 所)	13	20
支 援 金 額	450 (百萬원)	650	1,000

VI. 맷 는 말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해서는 農業所得源을 多變化하기 위한 複合營農示範事業의 推進과 함께 長期的으로 이를 補完하기 위한 農外所得源을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다.

農外所得의 開發은 主로 農村工業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데, 農村工業育成은 關係部處의 協助는 勿論, 企業人 등 經營人們의 協助도 切實히 必要하다.

지난 4월, 政府關係者와 經濟團體長이 자리를 같이한 조찬간담회에서 農漁村의 所得增大를 위한 農外所得源開發이 積極的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는 意見을 같이하고 農村工業育成을 위하여 經濟人們이 적극 參與하겠다는 決意를 다짐한 바도 있어 政府로서는 農村工業育成에 커다란 希望을 갖고 있다.

앞으로 農外所得의 增大를 통하여 農漁村經濟가 活性化되고 우리모두가 바라는 福祉農漁村建設을 하루빨리 앞당겨 實現할 수 있도록 政府는 계속努力해 나갈 것이다.

農漁村 所得源 開發政策의 推進背景과 基本方針

金 英 泰

(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長)

I. 農政의 與件變化와 農外所得의 重要性增大

1. 農政의 與件變化

우리나라는 80年代에 들어서서所得이增加함에 따라 主穀인 穀物의消費는 減少하고 畜產物·野菜類·水產物의消費가增加趨勢를 보이는食品消費構造의變化로 말미암아 쌀消費는 3,700萬石水準에서 安定되고 있으나 보리는 每年 減少하여 主穀의 自給은 可能하다고 보아진다.

- 83年的 경우 主穀自給은 達成되었으며 앞으로도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등 既存 生產基盤擴充事業 등으로 因한 生產性增加趨勢로 보아自

表1 쌀·보리生産 및 消費

단위 : 千石

區 分		1970	1975	1982	1983	備 考
쌀	生 產	27,356	32,424	35,938	37,529	91年 展望
	消 費	30,516	32,632	37,900	36,780	36,650
	(1人當消費kg)	(136.4)	(123.6)	(130.2)	(126.9)	(112.0)
보리	自 紿 率 (%)	89.6	99.4	94.8	102.0	
	生 產	11,528	12,326	5,426	5,906	日本의 例로 보아 보리는 食糧으로서 用途가 事實上 없다고 보여짐 <日本>
	消 費	10,847	13,395	6,315	4,900	
	(1人當消費kg)	(37.3)	(36.3)	(14.0)	(9.5)	
	自 紿 率 (%)	106.3	92.0	85.9	120.5	0.7kg(79年)

表 2 韓國과 臺灣의 農家所得 比較, 1981

區 分		韓 國 (A)	臺 灣 (B)	A / B 倍
耕 地 規 模 (ha)		1.08	1.04(1980)	1.0
農 業 所 得 (千 원)	1975	715	508	1.4
	1981	2,477	1,320	1.9
農 家 所 得 (千 원)		3,688	4,110	0.9
都 市 家 口 所 得 과 比 較 (農家所得 / 都市家口所得 %)		102.8 (1983)	73.1	-
農 外 所 得 比 重 (%)		32.8	77.9	-

給水準은 繼續 維持될 것으로 判斷된다.

그동안 農家所得은 主로 米麥所得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主穀의 自給이 達成됨에 따라 增產에 의한 所得增大는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價格引上에 의한 所得保全은 어려운 형편이다. 즉 그동안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은 國民經濟 負擔을 加重시켜 이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본다.

- 例로, 營農規模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臺灣의 경우보다 農業所得額의 規模가 매우 크며 그 隔差가 점차 擴大되었는데 이는 農產物에 대한 價格支持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農家 1 戶當 平均耕地面積은 1.09ha에 불과하고, 1 ha 未滿의 農家가 全體農家の 67 %를 차지하고 있어 營農規模의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農業所得 伸張의 限界가 있음을 의미한다.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農業所得에 의한 農家所得增大는 限界가 있다.

2. 農外所得 增大施策의 必要性

그런데 農家所得에서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比率은 일본이나 대만이 80 %에 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32.8 %에 불과하다.

따라서 農外所得 增大를 위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施策을 樹立하기 위하여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政策」을 構想하게 된 것이다.

II. 推進經緯

1. 政策樹立

農外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1981年9月에 經濟企劃院에 「農外所得開發企劃團」을 만들어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代案을 構成하여 1982年9月22日 月間經濟動向 報告時 大統領각하께 “農家所得 增大를 위한 重點施策”을 報告드리고 同施策을 本格的으로 推進하게 되었다.

2.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法의 制定

農家所得增大 施策을 뒷받침 할 수 있는 制度를 정착시키고자 83.6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法」으로 臨時國會에 提出하여 9月 定期國會에서 통과, 12月1日에 公布하였으며, 지난 5月에 同法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施行令을 制定, 公布하였다.

3. 農漁村所得源開發 基本方針 樹立中

農漁村所得源 開發에 指針이 되는 基本方針을 樹立하기 위하여 施行令 制定後 關係部處의 所管別 施策을 취합하여 基本方針을 樹立하는 中이며, 農漁村所得增大 施策의 핵심이 되는 農漁村 工業導入을 위하여 農工地區를 指定, 團地를 造成코자 現在 各道로부터 2個씩의 候補地를 接受(總 16個) 關係部處에서 妥當性을 檢討中에 있다.

III. 農漁村 所得增大 施策의 基本方向

農漁村 所得增大를 위해서는 첫째로, 農工地區의 指定・育成으로 農漁村 地域의 工業을 本格化하고, 둘째로 農漁村 遊休人力의 活用을 위하여 副業團地를 育成하고 새로운 所得源으로서 農漁村 休養地를 開發코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主로 農漁村 工業導入促進施策에 대해 言及하고자 한다.

表 3 새마을工場과의 差異點

區 分	새 마 을 工 場	農 工 地 區
立 地 形 態	分散立地	工團立地
規 模	1 個工場	5 ~ 10 個工場
業 種	農家工產品工業, 農家副業製品	都市 및 海外指向工業
支 援 策	實質的 支援施策微弱	實質的 支援策請求

1. 農漁村工業의 育成方向

農漁村工業促進施策은 農工地區를 指定하여 農村地域에 工業을 誘致하여 農外所得을 增大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 農工地區의 概念

農工地區란 全 郡地域 및 人口 10 萬以下의 市地域을 對象으로 1 ~ 2萬坪의 工業地域을 造成하여, 入住業體에 대한 金融, 稅制, 技術支援등을 強化함으로써 農漁村地域에 工業導入을 促進하는 것이다.

나. 새마을工場과의 差異

既存에 推進하여 오던 새마을工場은 大部分 大都市周邊에 位置하여 農外所得에 크게 寄與하지 못하였고 道路網等 社會間接施設과 勞動力供給, 金融機構 및 技術情報의 接近度等을 充分히 考慮하지 않고 個別工場別로 散在하여 位置하였고 지나친 政府支援을 期待하고 시작한 經營經驗이 不足한 事業主의 經營未熟으로 一部 不實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推進하는 「農工地區」는 1 ~ 2 萬坪 規模의 工業團地를 造成하고 5 ~ 10 個의 工場을 集團的으로 誘致開發하는 것으로 새마을工場育成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表 3>.

2. 農工地區의 指定

가. 指定節次

- 市長, 郡守가 農工地區後補地 造成計劃을 道知事를 經由하여 經濟企劃院 長官에게 提出

- 經濟企劃院에서는 關係部處 合同으로 構成된 實務作業반에서 檢討
→ 實務委員會 → 中央委員會 審議 → 市長・郡守가 指定

나. 指定計劃

- 84年 : 각도별로 1개씩 8개 (후보지 16個所 접수)
- 85年 : 84년 入住業體 결과를 評價後 결정
(단 85豫算에는 8個 반영 豫定)

다. 指定對象 事項

- 入住 회망업체가 많은 地域
- 當該地域의 雇傭 및 所得增大的 效果가 큰 地域
- 公共시설의 設置가 용이한 地域
-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연접되지 않은 地域
- 인근에 工業團地가 없는 地域

라. 地域選定時 檢討基準

- 入住 회망업체수, 入住面積, 生產豫定品目, 誘致業種
- 農漁村 雇傭 및 所得增大 效果
- 交通條件 (道路, 鐵道, 港灣), 公用 용수, 通信, 동력 등의 現況과 設置可能性
- 地區造成時 所要資金 및 資金調達計劃, 國고 및 地方費 支援 必要額
- 인근 工業地域 現況
- 農漁村 環境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 評價

3. 農工地區의 造成

- 地區造成은 市長郡守의 責任下에 造成하고
- 用地買入, 團地造成, 道路, 用水, 電力, 電話 등 公共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國家 및 지방자치단체가 支援
- 금년도 工事分은 中央부처가 支援金額을 確定後 85년도豫算에 반영 지원

4. 農工地區 入住業種의 選別

가. 禁止, 制限 業種

- 特정유해물질 配出業種 및 오염물질을 다량 配出하는 유해업종
(환경청에서 Negative List 작성중)

나. 優先 誘致業種

- 勞動集約의이고 機能 수준이 比較的 낮은 業種
- 앞으로 農漁村에 需要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業種
- 農漁村 地域의 부존자원 및 산물을 活用하는 業種
- 大企業과 系列化된 業種 및 企業
- 中·小企業 協同化 事業을 하려는 業種 및 企業
- 當該地域特化 業種

다. 入住業體의 알선

- 經濟 4 團體長 懇談會를 통하여 指定된 農工地區에 대한 入住 협조
要請
- 指定된 農工地區에 대한 안내자료 配付
- 入住 안내 및 就業안내센터 活用

5.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支援

가. 金融支援

- 輸入農產物 販賣收入金으로 中小企業振興工團에 「特別計定」을 設置하여 農工地區入住業體에 優先支援
- 자금의 여유가 있을때 其他 農漁村地域의 중소기업지원
- 支援金額 및 條件
施設資金 : 소요자금의 70 %支援 3年据置 5년償還 年利 10 %
運營資金 : 소요자금의 70 %支援 1年据置 1년償還 年利 10 %

나. 技術 및 經營指導

- 中小企業振興工團이 유망中小企業으로 선정 책임관리
- 支援擴大를 위해 中小企業振興支部를 設置推進 : 85年에 부산, 광주

다. 人口 確保支援

- 農工地區 鄰近 「職業訓練機關」의 85年 訓練計劃에 當該 農工地
區의 誘致業種에 알맞는 訓練課目 알선

- 勤勞者 厚生福祉施設에 대한 稅制支援 推進

라. 行政節次의 簡素化 (既措置)

- 事業承認時 市長·郡守가 事業者를 대신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協議하여 承認, 行政節次를 簡素化

마. 稅制減免 (既措置)

- 國稅減免

- 對象 : 農漁村所得을 증대하기 위해 農工地區 · 農漁村工業園地에서 事業을 영위하는 자, 農漁村地域에서 農水產物 加工工場을 建設運營하는 자

- 減免內容 : 每年 事業用 資產價額의 15 % 範圍안에서 投資準備金 設定時 費用으로 인정. 減價償却費를 一般의 경우 보다 100 % 追加하여 인정

- 地方稅 減免

- 取得稅 登錄稅 면제

- 財產稅 1년간 全額免除, 그후 3년간 50／100 免除

6. 支援機構의 捩強

- 中小企業振興工團에 「農漁村 中小企業支援機構」를 設置

가. 農工地區에 대한 入住誘致

- 각종 弘報資料 作成 配布

- 상설안내소 設置 - 入住권유, 案內, 弘報

나. 農工地區 入住業體에 대한 妥當性 檢討 및 支援資金 管理

다. 技術 및 經營指導

라. 其他 農漁村 工業導入促進을 위한 施策開發

7. 農漁村地域 既存 中小企業支援

가. 金融機關의 支援強化

- 中小企業銀行에서 「中小企業特別資金」支援의 擴大

나. 技術指導 및 經營指導 強化

- 유망 中小企業으로 最大한 發掘支援

農漁村 所得源開發의 政策課題

특히 農村工業開發을 中心으로

崔 洋 夫

農經研 農村開發研究室長

李 桐 弼

農經研 農村開發研究室 研究員

I. 問題의 提起

- 최근 정부에서는 “農漁村地域에 工業 및 서비스產業을 誘致하여 農漁村所得源의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農漁村所得을 增大하고, 農漁村所得構造를 高度化하여 農漁村經濟의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法律 第 3689 號. 1983.12) 을 제정하고 農工地區를 중심으로 한 農村工業開發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農工地區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 農村工業開發은 農家所得을 補填하기 위해 단순히 農外所得增大만을 고려한 施策이 아닌가?
 - 農工地區의 指定 및 造成이 새마을工場育成 또는 地方工業開發과는 어떻게 다른가?
 - 農工地區는 行政的으로 누가 담당해야 하며,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 따라서 이와같은 狀況에서 1960~70 年代 經濟主義的 開發의 問題點 과 地方經濟 및 農村經濟의 實態 그리고 農村工業開發의 方向과 政策 課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서울·首都圈의 팽창과 地方經濟의 침체

1. 1960~70年代의 經濟成長과 서울·首都圈의 팽창

- 1960~70 年代의 經濟主義的, 大都市偏向의 經濟社會開發은 人口 뿐만 아니라 經濟, 社會, 教育, 醫療, 文化, 行政 等의 全分野에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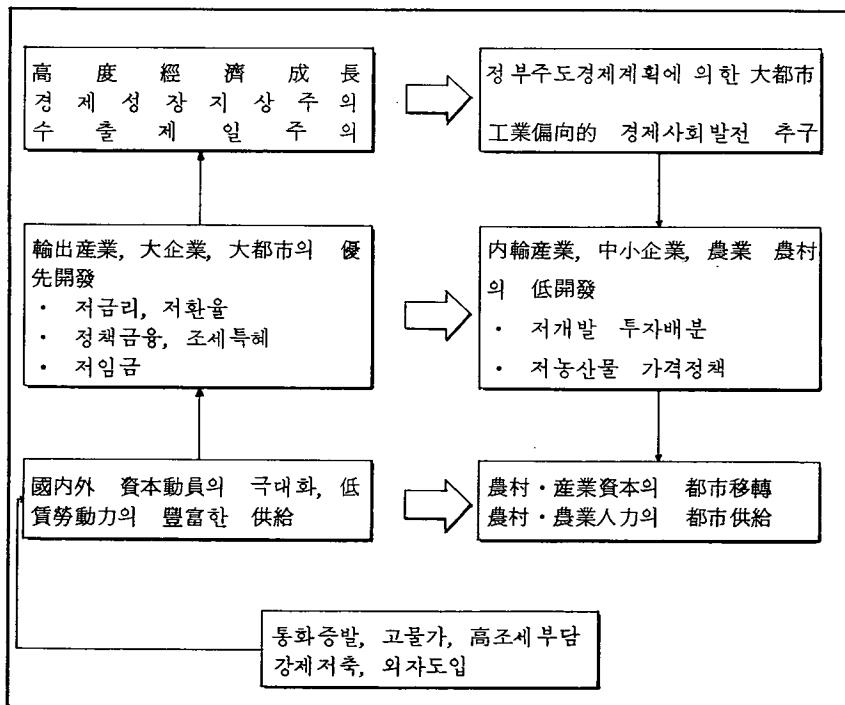
그림 1 主要經濟社會指標의 서울集中度, 1980

區 分	서 울 集 中 率 (全 國 = 100)					
	10	20	30	40	50	60
面 積	0.6					
人 口		22.3				
產業別國民總生產		28.9				
製造業體數			42.6			
輸出業體數			55.8			
金融機關		36.1				
銀行貸出				62.0		
法人稅				66.2		
地方自治團體豫算額		43.6				
醫療機關		40.6				
醫師		50.6				
大學校 및 大學院 (4 年 制 79)			56.0			
大學校 및 大學院 學生 (4 年 制 79)			71.5			
학생고사점수분포 (300 점이상, 83)		39.5				
文藝振興基金使用			80.0			
公共機關所有文化財			80.0			

쳐서 서울集中을 가속시켜 왔으며, 이것은 다시 서울 및 首都圈地域으로의 人口集中을 誘引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서울·首都圈의 異常은 1960~70年代 우리경제사회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해온 經濟主義的 開發哲學과 이에 바탕을 둔 成長優先의 大都市·工業偏向의 開發戰略의 結果라고 얘기할 수 있다.
 - 經濟主義的 開發論理 (經濟成長至上主義)
 - 政府主導經濟開發論
 - 不均衡成長論 (工業優先開發論, 成長據點開發論)
 - 對外指向開發論 (開放經濟論, 比較優位論, 輸出主導開發論)
 - 先成長 後分配論
 - 이상과 같은 開發論理에 따라 추진되어온 1960~70年代의 經濟社會發展戰略의 基本構造를 要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960~70年代 經濟社會發展戰略의 基本構造



2. 地方經濟 및 農村經濟의 相對的 沈滯

- 地方經濟를 편의상 서울 및 首都圈 이외의 經濟를 意味하는 것으로
전체 할 때 地方經濟는 郡部를 중심으로 하는 農村經濟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 서울을 제외한 地方의 총인구에서, 郡部, 즉 農村地域의 人口가 차
지하는 比重은 60~70% 水準이다.
 - 地域總生產額中 郡部比率 역시 50%~60% 水準을 담당하고 있
어서 地方經濟의 대부분이 農村經濟로 구성되어 있다.
- 그동안 大都市中心의 工業開發로 農村經濟는 相對的으로 정체되어
왔다.
 - 邑部 및 面部를 農村地域으로 할 때 1970/80년 동안 農村地域의
人口, 就業人口 및 農村就業人口는 감소하는데 비해 非農業就業
인구는 연평균 1.35%씩 증가하여 1980년 현재 農村就業者의
27.9%인 1,751千名이 非農業部門에 종사하고 있다 <表2>.

表1 地方經濟의 性格分析, 1980

區 分	總 人 口 (千人)			地域總生產 (10 億원)		
	計	市 部 (%)	郡 部 (%)	計	市 部 (%)	郡 部 (%)
서 울	8,916	100.0	-	4,208	100.0	-
경 기	3,851	41.5	58.5	4,798	55.0	45.0
강 원	1,792	32.3	67.7	1,347	43.0	57.0
충 북	1,451	31.2	68.8	1,332	39.3	60.7
충 남	3,009	26.1	73.9	2,157	31.2	68.8
전 북	2,329	35.0	65.0	1,535	39.4	60.6
전 남	3,812	33.6	66.4	2,999	49.0	51.0
경 북	3,184	23.1	76.9	2,523	37.9	62.1
경 남	3,320	41.3	58.7	3,798	56.4	43.6
전 국	38,124	70.5	29.5	35,031	38.4	61.6

表2 農村地域의 非農業就業人口의 變化

區 分	1960	1970	1980	年平均增減率		
				1960/70	1970/80	1960/80
農村人口*	17,987	18,506	16,200	0.28	△1.44	△0.58
農村經濟活動人口	5,700	6,455	6,458	1.25	0.00	0.61
就業人口	5,502	6,411	6,266	1.54	△0.23	0.65
農業 (%)	4,450 (80.9)	4,879 (76.1)	4,515 (72.1)	0.92	△0.77	0.07
非農業 (%)	1,052 (19.1)	1,532 (23.9)	1,751 (27.9)	3.83	1.35	2.58

* 農村地域은 邑部, 面部를 意味함.

- 그러나 都市地域의 非農業就業人口 및 製造業人口와 比較하여 보면 農村地域이 相對的으로 低調하게 증가하고 있다 <表3>.

表3 農村 非農業就業人口의 相對的 減少

區 分	1960	1970	1980	年平均增減 (%)		
				1960/70	1970/80	1960/80
非農業就業人口 (A)*	2,396	4,996	7,887	7.63	4.67	6.14
都 市	1,344	3,464	6,136	9.93	5.88	7.89
農 村 (B)	1,052	1,532	1,751	3.83	1.35	2.58
B / A (%)	43.9	30.7	22.2			
製造業 (C)	477	1,448	2,797	11.74	6.81	9.25
都 市	284	1,039	2,270	13.85	8.13	10.95
農 村 (D)	193	409	527	7.80	2.57	5.15
D / C (%)	40.5	28.2	18.8			
都小賣場飲食宿泊業(E)	586	1,280	2,059	8.13	4.87	6.48
都 市	320	913	1,607	11.05	5.82	5.38
農 村(F)	266	367	452	3.27	2.11	2.69
F / E (%)	45.2	28.7	21.9			

* 總就業人口 가운데서 農林水產部門就業人口만을 除外한 것임.

表4 產業別 就業人口의 農村·都市配分率 變化

단위 : %

區 分	1960		1970		1980	
	農 村	都 市	農 村	都 市	農 村	都 市
農 業	96.1	3.9	94.6	5.4	94.2	5.8
鑄 業	88.9	11.1	86.0	14.0	86.9	13.1
製 造 業	40.4	59.6	28.3	77.7	18.8	81.2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33.4	66.6	21.4	78.6	29.5	70.5
建 設 業	39.1	60.9	29.7	70.3	21.4	78.6
商 業	45.3	54.7	28.7	71.3	22.0	78.0
運輸·通信業	37.6	62.4	28.0	72.0	21.5	78.5
其他服務業*	44.3	55.7	32.2	67.8	25.0	75.0
計	78.3	21.7	63.1	36.9	49.4	50.6

* 금융, 보험업 포함

資料 : Yang Boo Choe, Rural Non-Farm activities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APDC, 1983.

- 產業別 就業人口의 農村 - 都市 配分率을 보면 農村地域의 總就業人口가 1960 年의 78.3 %에서 1980 年에는 49.4 %로 減少하였으며, 같은 기간 農村의 제조업취업인구도 40.4 %에서 18.8 %로 減少하여 全體적으로 農村經濟의 정체 혹은 상대적 저발전현상을 알 수 있다 <表4>.

3. 農村人口의 急激한 減少

- o 1960~70 年代의 高度成長 과정에서 經濟的 效率性을 추구한 成長據占中心의 工業開發은 地方·農村經濟의 정체와 함께 農村人口의 大量流出과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 1970~80 年間 農村人口는 年平均 2.26 %씩 減少하여 約 322 萬名의 絶對人口가 減少하였으며, 특히 面單位 農村地域에서는 年平均 3.07 %씩 減少하여 約 420 萬名의 絶對人口 減少가 있었다.
- 農村人口率도 1960 年의 64.2 %에서 1980 年의 33.6 %로 急激히 減少하였다.

表 5 農村人口의 減少動向, 1960~80

단위 : 1,000名, %

區 分	人 口			年平均增加率(%)	
	1960	1970	1980	1960~70	1970~80
總 人 口 (A)	24,989	31,434	37,436	2.29	1.76
都 市 人 口*	8,947	15,652	24,875	5.59	4.74
農 村 人 口 (B)	16,042	15,782	12,561	-0.16	-2.26
(面 人 口)	15,731	15,656	11,463	0.00	-3.07
農村人口率 (B/A)	64.2	50.2	33.6		

* 行政區域上 市와 人口 2 萬以上인 邑의 人口。

- 이와같은 農村人口의 감소는 農村人口의 社會的 移動, 즉 매년 農村 地域의 人口가 都市地域으로 60 萬名 (1966~80년) 정도 流出된 데 기인한다.
- 1970~80 年間 우리나라 全體人口增加分 669 萬名의 44.7 %가 서울地域에 配分되었으며, 京畿道를 包含한 首都圈地域에서 69.7 %를 吸收한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 이와같은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거나 子女들의 教育目的上 離村에 그 원인이 있는데 1980 年에 調查된 한 研究結果는 서울市 流入人口의 移入事由는 就業目的이 55.6 %, 教育目的이 23.5 %로 들고 있다.

表 6 農村人口의 社會的 移動推定, 1955~80 *

단위 : 1,000名, %

期 間	自然增加率	農村人口增減率	農 村 人 口 社會的移動率	農村人口의 社會的移動
1955~60	3.05	1.33	-1.72	281
1960~66	2.61	0.86	-1.75	306
1966~70	1.90	-1.67	-3.57	605
1970~75	1.98	-1.77	-3.75	595
1975~80	1.54	-2.75	-4.29	605

* 年平均 增減率 또는 年平均 移動人口。

表7 人口增加分의 地域配分

단위 : 1,000名, %

區 分	人 口 增 加 分		地 域 配 分	
	1960~70	1970~80	1960~70	1970~80
全 國	6,445	6,690	100.0	100.0
서 울	3,080	2,993	47.8	44.7
釜 山	712	1,341	11.0	20.0
京 畿	604	1,671	9.4	25.0
江 原	228	-42	3.5	-0.6
忠 北	110	-29	1.7	-0.4
忠 南	330	151	5.1	2.3
全 北	37	-103	0.6	-1.5
全 南	452	-157	7.0	-2.3
慶 北	708	495	11.0	7.4
慶 南	101	264	1.6	3.9
濟 州	83	106	1.3	1.6

資料：國土開發研究院。

- 한편 1982~83년간에 걸쳐서 3개 農村地域에서 실시된 사례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表9>와 같이 조사대상 농촌주민의 20~30%

表8 서울시 流入人口의 移入事由, 1980

移 入 事 由	構 成 比
就 業	55.6 %
職場關係	34.6
일자리를 찾을 目的	10.8
장사 또는 事業上 理由	10.2
教 育 目 的	23.5
家族移住에 合流	15.4
其 他	5.5
公共文化施設 良好	1.7
친구 및 친척의 권유	2.7
其 他	1.1

資料：國土開發研究院，「首都圈整備 基本計劃」，1981.

表9 農村住民들의 離村意思

離村意思	京畿安城(1982)	全南康津(1982)	慶南固城(1983)	단위: 명, %
계속 거주하겠다.	471 (76.5)	491 (59.9)	229 (51.5)	
모르겠다.	29 (4.7)	141 (17.2)	60 (13.4)	
이주하겠다.	116 (18.8)	188 (22.9)	156 (35.1)	
계	616 (100.0)	820 (100.0)	445 (100.0)	

資料：崔洋夫外, 1982, p.50; 1983a, p.46; 1983b, p.

가 잠재적인 離村意思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조사 결과는 農村을 지배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이전에는 앞으로도 農村人口의 離村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4. 都市問題 및 地方·農村問題의 累積的 惡循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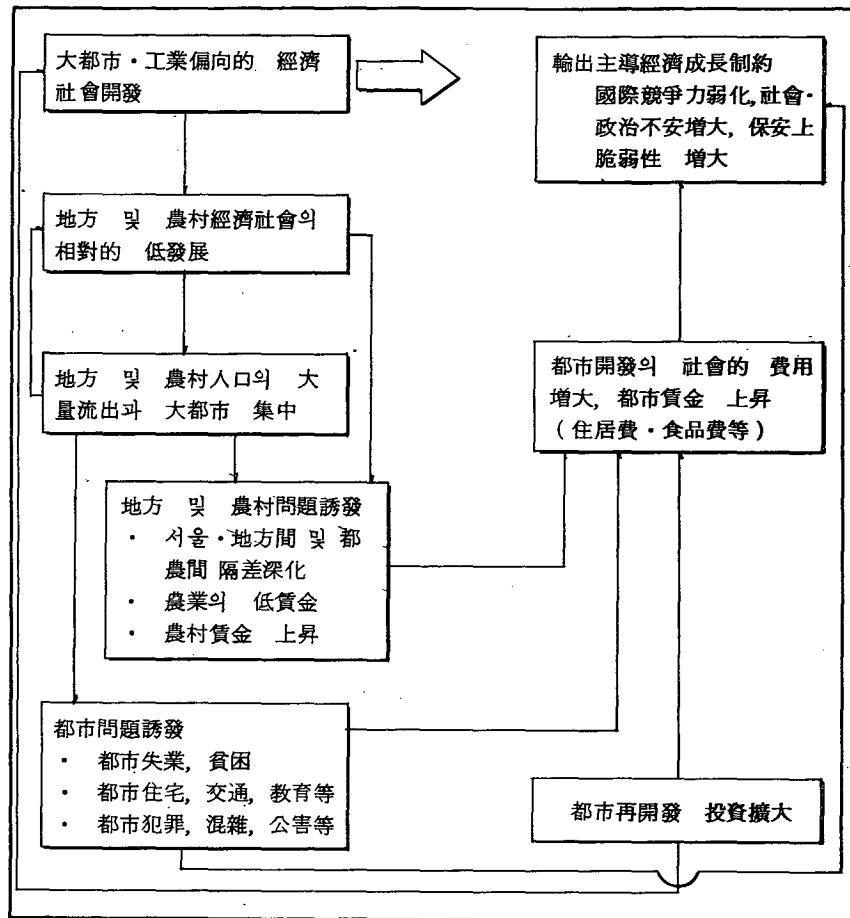
- 1970年代에 있어서 서울 및 首都圈의 팽창과 함께 진행되어온 農村人口의 급격한 감소는 都市問題 및 地方·農村問題의 累積的 惡循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우리사회에 提起하고 있다.
- 1960~70年代에 있어서 農村人口의 都市集中은 값싼 양질의 勞動資源을 基盤으로 한 輸出主導 經濟成長을 可能케 한 直接的인 要因의 하나가 되었으나 農業構造革新과 農業機械化가 수반되지 않은 農村(農業)人口의 急激한 減少는 農業勞動力不足을 通한 農村賃金의 上昇을 가져와 農業成長을 제약하는 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表10 農村賃金上昇의 韓·日間 比較

年 度	韓國 (원)		日本 (엔)	
	男 子	女 子	男 子	女 子
1970	579	392	1,611	1,263
1980	6,509	4,841	4,789*	3,720*
年平均上昇率(%)	27.4	28.6	12.9	12.8

* 1979年

그림 3 都市問題 및 地方·農村問題의 累積的 惡循環



- 뿐만 아니라 農村經濟社會基盤의 파괴와 그에 따른 國民食糧供給能 力의 弱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農村地域에서의 人口減少는 耕地利用率의 低下와 限界農地의 遊休化를 통해 국토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 農村의 空洞化, 마을의 廢村化
 - 특히 山間, 島嶼 海岸地域에서의 높은 人口減少로 保安上 後方戰 力의 弱化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表 11 서울市民 1人增加에 따른 都市「서비스」費用／年間

單位: 원, (1980年不變價格)

都市「서비스」部門	限界費用	構成比 (%)
住 宅	418,000	62.0
教 育	49,100	7.3
供給處理 (上下水道等)	127,200	18.9
交 通	43,600	6.5
保 健 · 衛 生	11,700	1.7
社 會 福 祉	24,600	3.6
計	674,200	100.0

資料：國土開發研究院，首都圈整備基本計劃(案)，1981，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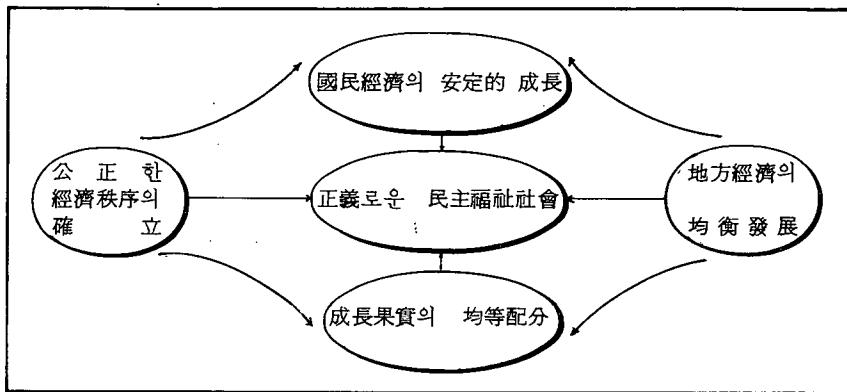
- 都市에 있어서는 失業, 貧困, 住宅, 交通, 教育等 많은 都市問題를 誘發시키고 있으며, 특히 都市生活費의 上昇을 통하여 都市勞動者들의 賃金上昇을 不可避하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어 輸出主導型 經濟成長 그 自體를 제약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 서울 및 首都圈地域內에 人口 및 產業, 經濟, 文化, 教育施設의 集中으로 安保上의 脆弱性 增大
- 都市再開發의 社會的 費用 增大

III. 2000年代의 國家發展을 위한 地方經濟의 活性化

1. 2000年代를 向한 國家發展指向

- 正義로운 民主福祉社會建設이라는 國家發展의 長期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地方經濟의 活性化를 통한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成長果實의 均等한 地域間 配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 2000 年代를 向한 國家發展指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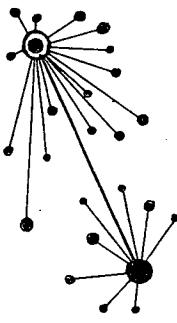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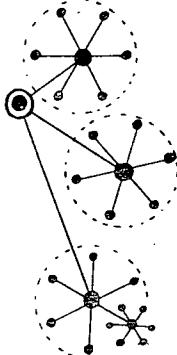


-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보았을 때 農村人口의 地方定着을 誘導하는 것은 大都市人口集中의 抑制나지 緩和를 위해서는 勿論 2000 年代의 均衡된 國土空間의 開發을 위해서 시급히 推進되어야 할 國家的 政策課題의 하나이다.

2. 地方經濟의 均衡發展

-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成長果實의 均衡配分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地方經濟의 均衡發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地方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成長據占 (大都市中心) 開發方式에 의한 위로부터의 開發에서 탈피하여 定住生活圈 開發方式으로 國土開發哲學의 基調轉換이 필요하다.
- 따라서 定住生活圈 開發方式에 의한 國土空間의 均衡開發과 地域住民의 基本需要充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밑으로부터의 開發이 이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農村中心都市 위치의 地方工業開發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人口의 定住生活圈 單位 定着과 地方經濟의 均衡發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림 5 2000 年代를 向한 國土開發哲學의 基調轉換

1960 ~ 1970 年代	1980 ~ 2000 年代
<ul style="list-style-type: none"> 成長據點 (大都市 中心) 開發 方式에 의한 國土開發의 不均衡 開發 成長優位의 위로부터의 開發 人口의 大都市集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定住生活圈 開發方式에 의한 國土 空間의 均衡開發 安定과 基本需要充足 優位의 밑 으로부터의 開發 人口의 定住生活圈單位 定着
	
成長主義的 國土認識	均衡主義的 國土認識

3. 定住生活圈方式에 의한 地方 · 農村開發

- 우리나라의 定住生活圈은 대체로 155 個로 區分될 수 있는데 中心 都市人口 規模가 10 만명이상인 都市定住生活圈이 32 개, 그 이하 規模인 農村定住生活圈이 123 個로 構成되어 있다.
 - 定住生活圈의 79.3 %가 農村定住生活圈이다.
- 地方 · 農村開發을 보는 새로운 視角의 定立
 - 2000 年代를 위한 地方 · 農村開發은 地域住民들의 삶의 質을 높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地方 및 農村定着을 전제로 地域의

表 12 地方 定住生活圈의 區分 (試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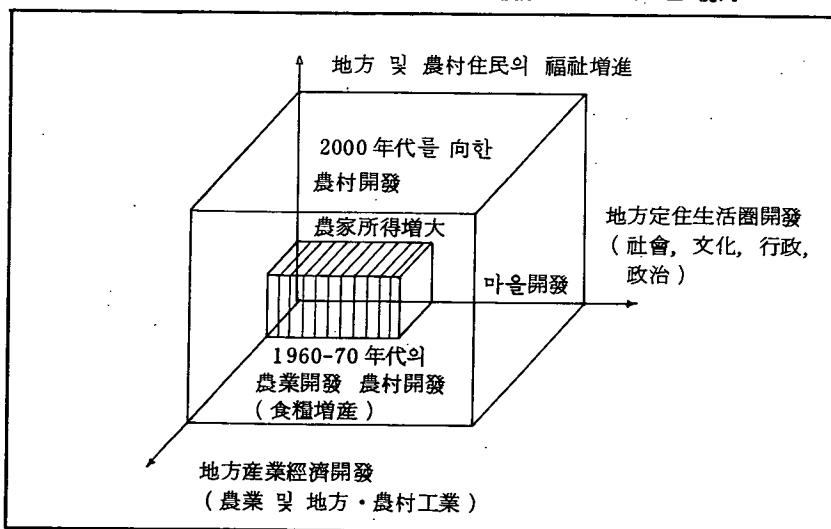
單位 : 個, %

區 分	中心都市人口規模	定住生活圈
都市定住生活圈	100 萬名以上	4 (2.6)
	100 - 50	2 (1.3)
	50 - 25	7 (4.5)
	25 - 10	19 (12.3)
農村定住生活圈	10 - 5	18 (11.6)
	5 - 2	53 (34.2)
	2 萬名以下	52 (33.5)
計		155(100.0)

經濟, 社會, 文化, 政治 등의 모든 분야에서 綜合的이고 均衡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推進되어야 한다.

- 2000 年代를 向한 地方·農村開發의 方向은 1960~70 年代의 마을開發, 食糧增產為主의 政策에서 탈피하여 住民의 福祉增進과 產業經濟, 특히 地方 및 農村工業開發을 통한 地方經濟와 農村經濟의 均衡發展을 도모해야 한다.

그림 6 2000 年代를 向한 地方·農村開發을 보는 새로운 觀角



IV. 農村工業開發의 現況과 問題點

1. 農村工業開發의 推進施策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農家의 農外所得增大와 都市의 과도한 人口集中을 억제하기 위한 農村工業開發과 都市工業의 地方分散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施策들이 推進되었다.

表 13 農村工業 및 地方工業開發 施策

	根據 法	施行年度	對象 地域	現況 (1983)
農漁村副業園地 育 成	農水產部 施策	1968	인구 20만이상 市를 제외한 전 국 농어촌	353개 부업 단지 조성
地方工業開發	地方工業開發法 (法律 2187號.)	1970	工業開發 장려 지구 ¹⁾ (市部中心)	25개 지방 공단 조성 (市部 17개 단지)
새 마을工場建設	農家工產品開發 規定 農村工業育成에 관한 規定 ²⁾	1973	邑面부 中心	741개 새마을 공장 ⁴⁾ (가동공장 494개)
工場 再 配 置	工業 配置法 (法律 3069號)	1978	誘致地域 ³⁾	—

- 1) 工業開發 장려 지구는 地方工業開發法 第 3 條에 의거하여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①工場 및 住宅用地의 확보가 용이하고 ②用水 및 電力의 확보와 수송,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한 곳 ③都市와의 適正거리 유지로 노동력 공급과 시장조건이 유리하며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④產業의 系列化가 용이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
- 2) 農家工產品開發 規定(商工部)은 1981년에 農村工業育成에 관한 規定으로 改編되었음.
- 3) 誘致地域은 工業配置法 第 16 條에 의거하여 ①工業의 密集度가 낮고 ②人口 및 工業의 受容效果가 크고 ③既存產業과의 系列化가 가능할 수 있고 ④工場用地,用水, 電力 등 지원시설의 정비가 용이한 地域을 의미한다.
- 4) 1981年現在

가. 農漁村副業團地의 造成目的 및 内容

1) 農漁村副業團地의 造成目的 및 内容

- 農漁村의 유후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副業團地를 造成 運營함으로써 農外所得을 증대시키고 地域產業의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1968년부터 造成하여 1982년 5월 말 현재 235 개소 (1983년 말 353 개소) 가 運營되고 있다.
- 對象地域은 工團地域 및 人口 20 萬以上의 市를 제외한 全國의 農漁村地域으로 團地當 10 戶以上의 農家가 出資, 賃加工, 自家生產, 就業의 形태로 參加하고 있다.
- 對象品目은 農漁村 유후노동력 흡수도가 높고 原料調達이 안정적이며, 製品의 需要展望과 附加價值가 큰 一般工產品, 民俗工藝品, 섬유, 직물, 農水產資材 등이다.

表 14 地域別, 業種別 副業團地 積動現況 (1982. 5 現在)

區 分	一 般 工 產 品	民 俗 工 藝	織 織 維 物	食 料 品	農 水 產 資 材	農 畜 產	計
京 畿	1	-	3	1	1	15	21
江 原	1	6	-	5	-	15	27
忠 北	1	4	2	8	0	-	15
忠 南	2	11	3	5	6	5	32
全 北	5	26	4	4	3	-	42(84)*
全 南	-	7	4	3	16	18	48
慶 北	1	12	3	2	3	7	28
慶 南	-	10	-	7	2	-	19
濟 州	-	1	-	2	-	-	3
計	11	77	19	37	31	60	235

註 : * () 안은 全北이 道單位로 自體造成한 團地임.

資料 : 農水產部 農政課.

表 15 年度別 副業園地造成 및 稼動現況¹⁾

단위 : 個, %

	造成園地數		閉鎖園地數		稼動園地數(C) (A-B)	稼動園地比率 (C/A)
	當年	累計(A)	當年	累計(B)		
1968~72	545	545	-	-	545	(100.0)
1973~75	106	651	98	98	553	(84.9)
1976~78	265	916	187	285	631	(68.9)
1979	38	954	41	326	628	(65.8)
1980 ²⁾	31	985	133	459	526	(46.6)
1981	17	1,002	145	604	398	(39.7)
1982 ³⁾	-	1,002	163	767	235	(23.5)

註 : 1) 道園地 84 個 除外.

2) 81 年 5 月 現在.

3) 82 年 5 月 現在.

資料 : 農水產部 農政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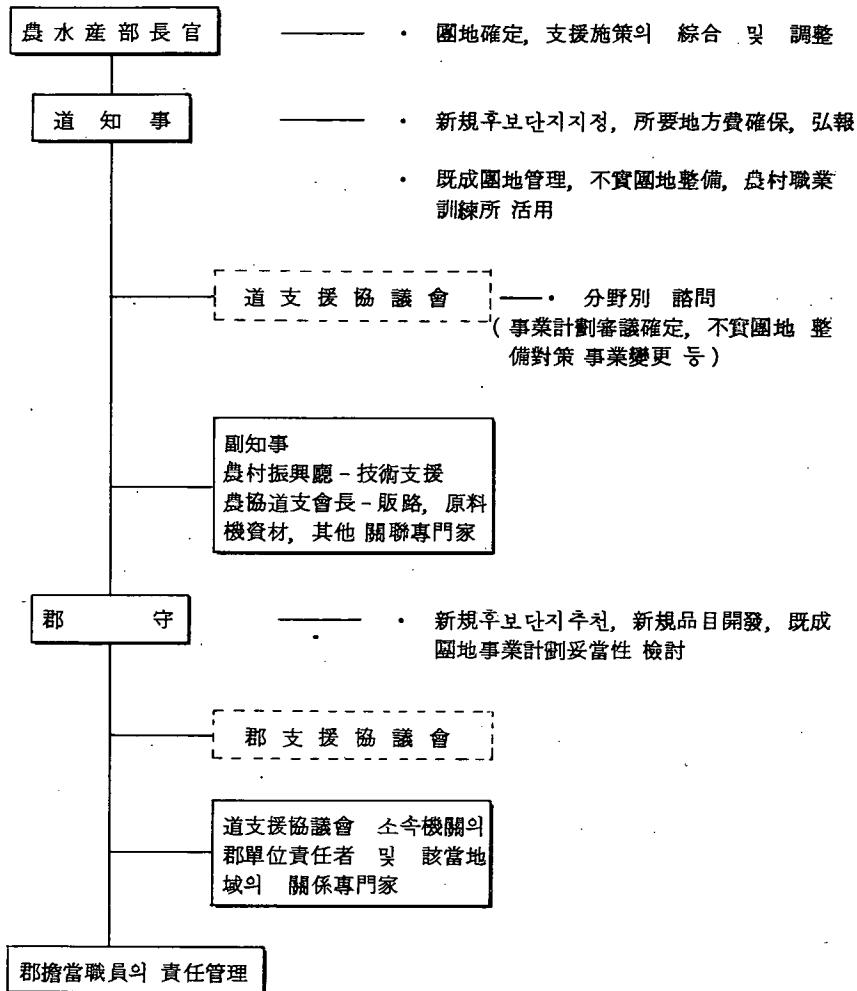
2) 農漁村副業園地造成 및 稼動現況

- 1982년 5월 현재稼動중인副業園地는 1000個造成園地의 23.5 %에 불과한 235個이며, 園地當就業者는 12.3名(상시취업자 7.0名, 임시취업자 5.3名)으로 그 規模가 지극히 영세하다.
- 地域別로는 全北, 全南이 각각 42個, 48個로 全國의 38.3 %를 차지하고 있으며 忠北이 32個로 13.6 %를 점하고 있다.
- 業種別 分布를 보면 民俗工藝部門이 77個로 가장 많고 農畜產部門이 60個로 이들의 점유율이 각각 32.8 % 및 25.5 %이다.

3) 農漁村 副業園地의 造成

- 農漁村 副業園地는 農水產部長官과 도지사의 책임하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農水產部長官은 新規園地의 指定 및 事業計劃을 확정해 주며, 도지사는 新規造成을 위한 事業推進 및 造成된 園地의 事後管理를 책임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7 現行 農漁村副業團地 行政支援體系圖



- 資金支援의 경우 新規副業團地에 대해서는 施設資金, 既成團地에 대해서 運營資金을 농업개발자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외 조건부 지원으로 3년이상 정상가동되는 團地로서 운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老朽施設代替 또는 시설 확장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表 16 農漁村 副業團地別 融資條件

團地 區分	資金種類	資 金 用 途	團 地 當 支 援 限 度	融 資 條 件	
				金 利 (%)	債 還 條 件
新規團地	施設造成 資 金	○ 建物 및 機械購入資金 ○ 其他 生產부대施設 造成 資金 但, 主된 目的인 土 地購入境遇에는 不可	5 천 만원	연 10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既成團地	運營生產 資 金	○ 原料購入資金 ○ 生產運營資金	3 천 만원	연 10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施設造成 資 金	○ 老朽施設 대체 자금 ○ 施設擴張 資金	5 천 만원	연 10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응자대상자는 부업단지 주체 또는 참여농가로 하고 있으며 대출은 信用貸出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신용보증부 또는 담보대출로 한다.
- 租稅支援은 「농어민 부업소득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연간 186만원 미만의 부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단지위주의 조세혜택은 國稅, 地方稅를 막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나. 새마을工場 育成政策

1) 새마을工場 育成政策의 目的 및 内容

- 새마을工場의 건설은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原料의 활용과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都·農間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농촌의 工業化 내지는 工場의 地方分散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973년 「農家工產品開發規定」이 제정된 이후 추진되었으며 이 규정은 1981년 「農村工業育成에 관한 規定」으로 개편되었다.

- 새마을工場은 食料品, 木材品, 土石製品등 농촌에서 직접 원료조달이 가능한 業種, 섬유, 잡화, 유리제품 등 生產工程이 단순하고 勞動集約的인 業種, 금속 및 기계기구제품, 전자제품등 大企業과 系列化가 가능한 업종과 기타 농외소득 증대가 가능한 業種을 육성대상업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 새마을工場은 1개 읍, 면의 행정구역내에 1개 공장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 20만 이상의 市 행정구역, 공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과 산업기지 개발구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새마을工場의 指定 및 稼動現況

- 1973년 165개의 새마을工場이 지정된 이후 1981년 현재 741개 업체가 새마을工場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741개 업체중 127개 업체가 건설중이거나 미착공 상태에 있으며 완공工場은

表 17 새마을工場指定 및 稼動現況

단위, 個所

區 分	指 定 工 場		稼 動 工 場	
	工 場 數	%	工 場 數	稼動比率(%)
釜 山	4	0.5	4	100
仁 川	2	0.3	2	100
大 邱	25	3.4	23	92
京 畿	238	32.1	189	79.4
江 原	27	3.6	18	66.7
忠 北	40	5.4	21	52.5
忠 南	68	9.2	41	60.3
全 北	48	6.5	17	35.4
全 南	82	11.1	33	40.2
慶 北	99	13.4	75	75.8
慶 南	102	13.8	69	67.6
濟 州	6	0.7	2	33.3
計	741	100.0	494	66.7

資料：商工部 農村工業課 (1981.12. 現在).

494 개 업체로 이중 가동업체는 지정업체의 66.7 %에 불과하다.

- 地域別로는 서울, 부산 및 大邱등 大都市 주변에 있는 京畿道와 慶南 및 慶北이 各各 238 개소 102 個所 및 99 個所로 전체의 59.3 %가 분포되어 있어서 당초의 農村工業開發 취지와는 달리 都市를 中心으로 한 工業開發의 연장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業種別로는 섬유제품이 39.7 %로 가장 높고, 비금속 광물제조업이 18.2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第1次 金屬製品 製造業과 나무제품 제조업은 적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18>.
- 한편 1億원 以下의 資金으로 運營되는 工場이 25.4 %인 184 個 業體 (이중 47 個는 3,000 만원 이하), 資金 5億원 이상인 工場은 90 個 業體로 12.5 %에 불과하여 資本規模의 零細性을 보여주고 있다. 從事員 規模別로는 92 %가 雇傭人 300 名 以下の 中小企業으로 나타났다.

表 18 業種別 工場稼動 現況

단위 : 個所

區 分	指 定 工 場		稼 動 工 場	
	工 場 數	%	工 場 數	稼 動 比率(%)
飲 食 料 品 製 造 業	89	12.0	40(8.1)	44.9
纖 維 · 가 죽 製 品 製 造 業	243	32.8	196(39.7)	80.7
나 무 製 品 製 造 業	17	2.3	11(2.2)	64.7
종 이 製 品 製 造 業	56	7.6	48(9.7)	85.7
化 學 製 品 製 造 業	58	7.8	29(5.9)	50.0
非 金 屬 鑽 物 製 品 製 造 業	145	19.6	90(18.2)	62.1
第 1 次 金 屬 製 品 製 造 業	4	0.5	1(0.2)	25.0
組 立 金 屬 · 機 械 裝 備 製 造 業	85	11.5	58(11.7)	68.2
其 他	44	5.9	21(4.3)	47.7
計	741	100.0	494(100.0)	66.7

資料 : 商工部 農村工業課 (1981 年 12 月 現在)

表 19 새마을工場 金融支援의 變化

區 分		資金規模	期間 및 金利	工場當限度
1981	施設資金	100 億원	8年(3年据置)	1億5천만원
	運轉資金	100 億원	2年(年利10%)	1億원
1982	施設資金	100 億원	8年(3年据置)	5億원
	運轉資金	100 億원	2年(年利10%)	1億원

資料：商工部 農村工業課。

3) 새마을工場 支援

- 1973년이후 새마을工場 育成을 위한 施設 및 運轉資金의 支援을 위해 產業合理化 資金, 國民投資基金, 中小企業施設資金 및 中小企業振興資金 등에서 약 640 억 원을 방출한 바, 이 中에서 施設資金이 420 억 원, 運轉資金이 220 억 원이었다. 1980년 이후에는 資金支援이 中小企業施設資金으로 단일화되었다.
- 1982년은 施設資金 150 억 원, 運轉資金 100 억 원을 策定하고, 施設資金의 경우 工場當 融資限度額이 5 억 원으로 引上되었다.
- 稅制上의 支援은 地方稅 減免에 국한되어 있는데 取得稅의 全額免除 및 財產稅의 초년도 全額免除과 向後 3年間 50% 減免으로 되어 있다.
- 그외 其他 支援策으로는 ①豫算會計法 施行令에 의한 隨意契約 혜택 ②電氣 및 電話의 우선가입 ③中小企業振興工團의 經營 및 技術指導 등이 있다.

2. 既存 農村工業開發의 問題點

가. 農村工業의 低開發

- 製造業部門의 高度成長에 따라 全國의 製造業體數 및 從業員規模도 各各增加하였으나 事業體數에 있어서 都市地域이 農村地域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表 20 都·農間 製造業 分布

區 分	1970		1980		指數(1970 = 100)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事業體數	從業員數
全 國	24,114 (100.0)	861,041 (100.0)	30,814 (100.0)	2,014,420 (100.0)	128	234
都 市	16,275 (67.5)	712,777 (82.3)	21,980 (71.3)	1,594,884 (79.2)	135	224
農 村	7,839 (32.5)	148,264 (27.7)	8,834 (28.7)	419,535 (20.8)	113	283

註: 1) () 안 숫자는 都·農間 分布 (%) 임.

2) 從業員 5人以上의 製造業體를 計算한 것임.

- 都市·農村間의 製造業分布는 1980年 現在 事業體의 경우 都市地域에 71.3%, 農村地域에 28.7%, 從業員은 都市 對 農村의 分布가 79.2% : 20.8%로 都市地域에 集中되어 있다.
- 1970年 製造業體의 경우 地域別 分布는 全南에 17.8%, 慶南이 16.3%, 京畿道가 15.5%, 忠南이 15.1%로 分布되었고 江原道와 忠北의 경우도 각각 6.6%와 5.7%로 地域間의 隔差가 크지 않았으나, 1980年에는 京畿道에 位置한 製造業體는 무려 30.6%로 大幅 增加되었고 忠北地域은 4.3%로 減少하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 특히 새마을工場은 積動業體의 44%인 218개 業體가 釜山, 仁川, 大邱 및 京畿道에 立地하고 있어서 都市中心工業開發의 延長에 지나지 않아 全體的으로 農村工業開發은 정체되어 있다.

나. 農村工業規模의 零細性

- 1980년의 製造業體當 從業員의 規模는 1970年에 비하여大幅增加되어 製造業體가 大型化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 農村地域의 製造業體當 從業員도 同期間에 크게 伸張되어 1970年에 平均 18.9名의 從業員이 1980年에는 47.5名으로 增加

表 21 都農間 製造業體의 平均從業員數

단위 : 名

區 分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全 國
1970	都市	51.1	66.1	63.6	19.5	28.4	35.1	34.1	19.8	27.7	48.6	12.8	43.8
	農村	-	-	33.8	16.9	22.2	15.8	12.6	11.0	19.4	19.8	21.2	18.9
1980	都市	58.2	87.9	97.4	27.4	75.1	70.2	68.7	35.7	61.7	136.0	15.2	72.6
	農村	-	-	63.4	21.7	39.8	33.5	22.0	27.4	52.6	67.4	19.6	47.5

하여 零細性을 벗어나고 있으나 都市地域 製造業에 비하여는 그 規模가 零細한 실정이다.

다. 農村工業의 緉動不振

- 農村工業의 低開發은 企業內部의 經營上의 問題와 企業外部의 立地條件上의 問題로 大別할 수 있는데 企業內部의 經營上의 問題로는 資金調達과 販賣, 技術不足, 原資材 및 人力 확보 등을 들 수 있는데 資金問題와 市場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表 22 農村工業 業種別 經營上 問題

區 分	經營上 問題									業體數
	資金 調達	販賣	施設 老朽	技術 不足	原資材 確 保	貸金 回數	同業者 競	技術人 力確保	計	
飲 食 料 品	451	104	37	7	5	6	-	1	611	
纖 維 · 衣 服	690	162	84	29	26	4	1	-	996	
나무 및 나무製品	186	39	12 ^b	5	4	1	1	-	248	
종이 및 종이製品	219	29	19	2	13	9	1	1	293	
化學 · 石油및 플라스틱	296	52	24	5	7	4	1	-	389	
非 金 屬 鑄 物	355	47	35	6	12	3	-	-	458	
第 1 次 金 屬	34	3	4	-	1	-	-	-	42	
金 屬 製 品 및 機 械	289	20	29	7	8	4	-	-	357	
其 他	74	5	5	3	4	1	-	-	92	
計	2,594 (74.4)	461 (13.2)	249 (7.1)	64 (1.8)	80 (2.3)	32 (0.9)	4 (0.1)	2 (0.0)	3,486 (100.0)	

資料 : 崔洋夫外, 農村工業의 現況과 問題點, 1978.12.

表 23 積動率 80 %미만 業體의 積動率不振理由

理 由	새마을工場 *	一般工場 *	計
原 料 不 足	15(26.8)	14(31.1)	29(28.7)
人 力 難	19(33.9)	12(26.7)	31(30.7)
販 賣 不 振	8(14.3)	7(15.6)	15(14.9)
資 金 不 足	5(8.9)	1(2.2)	6(5.6)
機 械 故 障	2(3.6)	5(11.1)	7(6.9)
其 他	7(12.5)	6(13.3)	13(29.9)
計	56(100.0)	54(100.0)	101(100.0)

* 새마을工場 192 個業體, 一般工場 107 個業體中 積動率 80 %미만業體

- 이와 같은 問題는 積動率 不振의 理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큰 理由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資金調達이 비교적 낫게 나타난 것은 이미 休業 및 廢業한 業體들이除外되었기 때문이 다.

라. 都市所在工場의 農村立地 忌避

- 都市所在工場들이 農村地域에 立地할 때 特別히 問題가 되는 立地因子를 보면 工業人力擴保가 39.4 %로 가장 크고, 製品販賣가

表 24 農村地域 立地時 問題되는 立地因子

단위 : 個, %

立 地 因 子	業 體 數	比 率
工業人力確保 困難	15	39.4
製品販賣 困難	7	18.4
工場敷地確保 困難	2	5.3
製品 및 資材輸送 困難	5	13.2
用水 및 動力調達 困難	2	5.3
道路 및 通信施設 未備	3	7.9
企業情報 蒐集 困難	2	5.3
原料調達 困難	1	2.6
其 他	1	2.6
計	38	100.0

資料 : 農外所得政策의 基本問題와 新しい 接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7.

表 25 道 路 鋪 裝 現 況, 1982

道 路 種 類	總 延 長	鋪 裝	鋪 裝 率
一 般 道 路	12,247 km	6,774 km	55.3 (%)
地 方 道	10,013	1,103	11.0
市 道	6,051	1,672	27.6
郡 道	11,377	532	4.7
全 國	50,336	17,179	34.1

18.4%, 製品 및 資材輸送, 用水, 道路 등 하부구조시설이 26.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農村下部構造의 低開發

- 農村地域의 道路, 交通, 通信, 動力, 工業用水등 物理的 下部構造 와 金屬, 情報 System등 社會的 下부構造가 低開發되어 企業活動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 특히, 農村地域의 輸送施設이 낙후되어 있는 테다가 도로포장률이 낮아서 原料나 製品의 輸送이 不便하고 輸送費가 많이 듈다.

바. 숙련된 技術人力의 不足

- 農村의 人口構造 및 農村勞動力의 季節的就業등으로 숙련된 技術人力의 確保가 곤란하다.
- 특히 農村人力의 老齡化, 婦女化 경향의 擴大로 農村 청장년들의 工場就業이 제한되어 있다.

V. 農村工業開發의 新로운 接近과 政策課題

1. 農村工業開發의 新로운 接近

가. 農村工業에 대한 概念擴張

- 지금까지 農村工業은 農村地域에 위치하면서 農業生產資材를 생산 공급하는 工業, 農產物을 加工하는 工業, 農村住民들에 의해 經營 되는 工業으로 인식되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立場은 지나치게 規範的이며, 非現實的일 뿐만 아니라 農村工業開發 자체를 제약시키는 개념틀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따라서 農村工業의 概念을 業種이나 規模, 또는 經營主體에 관계없이 農村地域에 立地하여 製造活動을 하고 있는 일체의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擴大해야 한다.

表 26 農村工業類型分析

單位 : 個, %

類型	業體數	構成比
農村依存型	104	38.8
農村市場·農村原料	13	4.9
農村市場	13	4.9
農村原料	78	29.0
非農村依存型	164	61.2
都市依存	71	26.5
海外依存	29	10.8
混合型	64	23.9
計	268	100.0

資料：農外所得政策의 基本問題와 新로운 接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7.

그림 8 農村工業에 대한 概念의 擴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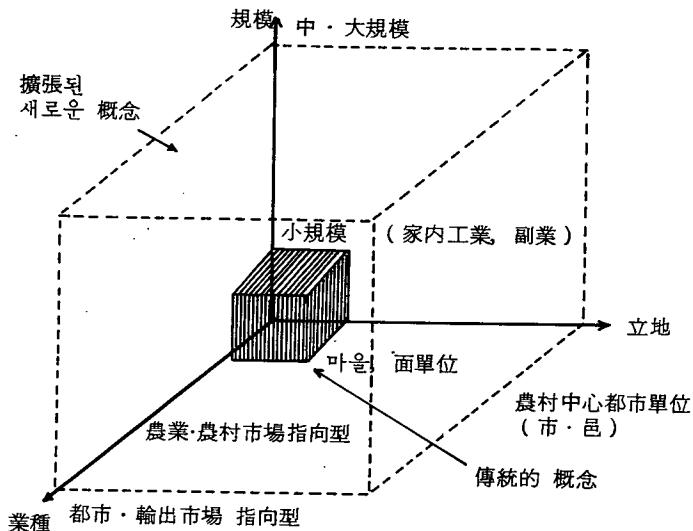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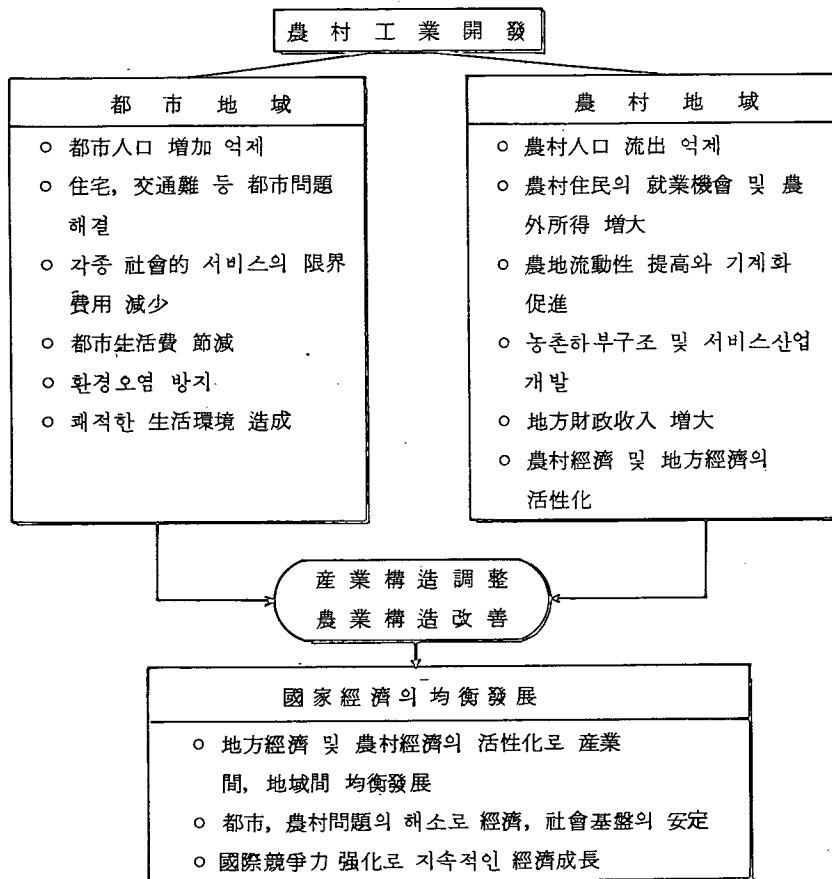
表 27 農村工業에 대한 概念 比較

區 分	傳 統 的 概 念	擴 張 된 概 念
規 模	◦ 家內工業, 農家副業등과 같은 小規模 工業	◦ 規模에 제한 없이 中·大規模도 包含
立 地	◦ 마을單位 (또는 面單位)	◦ 農村中心都市 (市·邑單位)
業 種	◦ 農村市場을 전제하거나 또는 農業關聯 工業	◦ 農村市場뿐만 아니라 海外 市場 指向的 工業
主 體	◦ 農家 또는 農村住民	◦ 近代的 企業人

나. 農村工業開發의 政策的 意味

- 農村工業의 開發은 人口의 農村地域定着과 都市工業의 地方分散을 통하여 農外所得增大와 農業構造改善으로 農村地域의 經濟社會基盤을 강화하여, 都市, 農村問題의 누적적 악순환을 극복함으로써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國土의 均衡開發을 통한 衡平을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된다.

그림 9 農村工業開發의 政策的 意味



- 즉, 農村工業開發은 大都市 人口集中을 억제, 分散시킴으로써 住宅, 交通, 教育, 의료문제등 각종 都市問題의 해소와 社會的 서비스의 限界費用減少로 勞動者의 임금상승요인 및 企業家의 立地因子改善 을 가능케 하여 輸出競爭力を 強化함으로써 지속적 經濟成長과 쾌적한 生活環境을 造成한다.
- 한편 農村地域에서는 農村住民의 非農業 就業機會와 農外所得을 增大시키고 農地流動性의 제고와 農機械化를 促進시키며, 農村下部構造 및 서비스產業의 發展과 地方財政收入의 增大를 가져와 農村經

濟 및 地方經濟를 活性化 시킨다.

- 뿐만 아니라 國家經濟의 側面에서도 地域의 均衡開發과 都市, 農村問題의 해소를 통해 건전한 成長의 지속과 均衡있는 복지국가, 經濟安定基盤의 定着을 유도할 수 있어서 農村工業開發은 安定, 能率平衡의 國家經濟社會開發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다. 農村工業開發의 政策方向

- 農村工業開發은 農村地域의 非農業就業機會를 擴大하여 農村의 人口定着과 農外所得의 增大 및 農業構造改善을 통해 均衡的인 成長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政策手段이 된다. 따라서 地方經濟의 活性화와 農村의 人口定着을 위해서는 다음 <그림 10>과 같은 체계에서 農村工業의 擴大開發이 必要하다.
- 農村工業은 農外所得增大뿐만 아니라 地方經濟의 活性화와 人口定着 및 農業構造改善의 시각에서 產業間, 地域間 均衡開發을 目標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10 農村工業開發의 目標와 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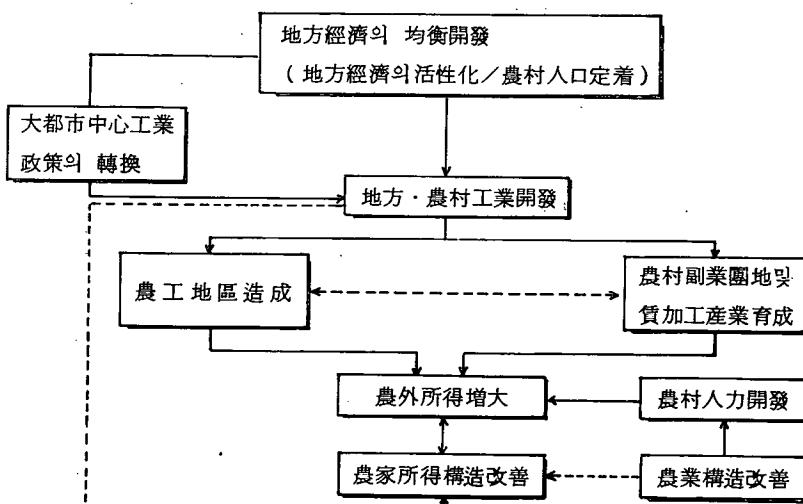


表 28 새마을工場과 農工地區의 差異點

	새 마 을 工 場	農 工 地 區
立 地 形 態	分散立地	工團立地
規 模	1개工場	規模制限 없음
位 置	邑·面單位	農村中心都市
業 種	農家工產品開發對象品目	業種制限 없음
支 援 政 策	部分的 支援	綜合的 支援

- 農村工業開發의 對象地는 農村定住生活圈의 中心都市에 立地함으로써 既存의 하부구조나 편익시설 및 市場을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뿐만아니라 小規模工團造成으로 여러개의 工場을 함께 集結시킴으로써 개발시 規模와 集積의 경제와 계열화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工團造成과 農村의 하부구조개발은 물론 경영기술지도, 제품판매 원료조달, 조세, 금융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때 농촌입지의 非經濟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農工地區는 새마을工場과는 달리 農村中心都市의 工團造成으로 여러개의 工場을 同時에 開發한다는 점과 綜合的인支援을 한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 한편 農村의 工業開發은 工團造成에 의한 工場의 集團誘致와 個別自由立地 및 副業形態의 家內手工業을 育成하는 것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工團으로 集團誘致하면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
 - 工團開發時 發生하는 規模의 經濟 (scale economics)
 - 중앙정부내지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工團造成은 企業規模擴大와 관련기업간의 系列化를 통해 대량 생산체계를 가능케 하여 생산비 절감
 - 立地選定과 地團設計費用 절감
 - 부지매수를 위한 기업간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음.

表 29 立地條件別 有利性 比較

단위 : 名, %

立地因子	分散立地有利	工業團地有利	別差異敘述	計
原料確保	2(9.1)	9(40.9)	11(50.0)	22(100.0)
労動力確保	5(22.7)	10(45.5)	7(31.8)	22(100.0)
市場販賣	1(4.5)	4(18.2)	17(77.3)	22(100.0)
動力使用	2(9.1)	14(63.6)	6(27.3)	22(100.0)
工業用水供給	3(13.6)	14(63.6)	5(22.7)	22(100.0)
通信施設利用	0(0.0)	16(72.7)	6(27.3)	22(100.0)
企業情報入手	1(4.5)	12(54.5)	9(40.9)	22(100.0)
行政規制事項	2(9.1)	11(50.0)	9(40.9)	22(100.0)
公害 처리	5(22.7)	10(45.5)	7(31.8)	22(100.0)

資料：安城定住圈 開發을 위한 工場調査, 1983.

表 30 土地用途地域別 工場立地現況

단위 : ha

地域	台安面		器興面		孔道面		計	
	個	面積	個	面積	個	面積	個	面積
耕地地域	38 (34.9)	56.9 (41.9)	25 (32.1)	21.0 (20.9)	7 (43.8)	10.0 (65.8)	70 (34.5)	87.9 (35.0)
聚落地域	14 (12.8)	20.4 (15.0)	1 (1.3)	1.4 (1.4)	3 (18.8)	1.0 (6.6)	18 (8.9)	22.8 (9.1)
都市計劃地域	24 (22.0)	36.0 (26.5)	29 (37.2)	33.9 (33.8)	-	-	53 (26.1)	69.9 (27.8)
山林保全地域	7 (6.4)	7.9 (5.8)	1 (1.3)	2.4 (2.4)	-	-	8 (3.9)	10.3 (4.1)
開發促進地域	4 (3.7)	6.0 (4.4)	1 (1.3)	30.8 (30.7)	6 (37.5)	4.1 (27.0)	11 (5.4)	40.9 (16.3)
未確認	22 (20.2)	8.6 (6.3)	21 (26.9)	10.8 (10.8)	-	-	43 (21.2)	19.4 (7.7)
計	109 (100.0)	135.7 (100.0)	78 (100.0)	100.3 (100.0)	16 (100.0)	15.2 (100.0)	203 (100.0)	251.2 (100.0)

資料：金聖昊外, 農村地域에 있어서 土地投機防止對策에 관한 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5.

- 企業集積에서 生산 外部經濟 效果
 - 國地造成에 따른 부대시설 - 동력, 공업용수, 진입도로, 배수로 설치등에 대한 투자비 절감
- 多數企業의 集結에서 생기는 특정서비스의 供與
 - 다수기업을 집단화함으로써 技術援助와 指導용이
 - 生産시설과 보관창고의 공동이용
 - 공동으로 원료와 제품의 시험검사 가능
- 특히 既存의 分散型 工業開發은 土地의 利用을 計劃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農工地區開發은 鑽澈한 農村環境造成과合理的 國土의 利用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表 30>.
- 결론적으로 農村工業開發은 農工地區를 中心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農工地區의 造成은 農村中心都市에 건설하되 地方工業開發의 次元에서 地方工團造成을 農工地區 開發로 대체할 必要가 있다.

2. 農村工業開發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가. 農工地區 造成規模 調整

- 政府는 農工地區의 地區當 造成規模를 現在 1萬坪內外로 하고 5~6개의 工場을 誘致하도록 하고 있다.
 - 農工地區의 開發이 農漁村所得增大와 所得構造의 多樣化로 농어촌 경제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는 目的을 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1만평 規模의 造成은 약 200명 (地域住民은 100명정도)의 고용효과 밖에 얻지 못한다.
- 農村地域의 工業立地與件으로 볼때 大規模工業團地造成은 사실상 제약이 있으나 1萬坪規模의 造成은 너무 영세하다.
- 지역의 特性에 따라서는 농공지구의 規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할때 農工地區의 規模를 10,000坪 以內에 획일화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1) 農工地區의 造成規模 推定

表 31 農村人口의 非農業 就業人口 推定

단위 : 千名

區 分	全 國		都 市		農 村	
	1983	1991	1983	1991	1983	1991
총 인 구	39,951	45,115	28,951	34,115	11,000	11,000
총 취업인구	14,415	18,200	9,155	12,825	5,260	5,375
농업취업	4,043	3,181	243	191	3,800	2,990
비농업취업	10,372	15,019	8,912	12,634	1,460	2,385
농 가 인 구	9,475	7,425	568	445	8,907	6,980
취업자	4,531	4,025	272	241	4,259	3,784
농업취업	4,043	3,185	243	191	3,800	2,990
비농업취업	488	845	29	51	459	794

- 인구 2만 미만의 邑 및 面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1991년까지 농촌인구는 현재 水準으로 유지시키고 감소하는 農業人口를 농촌지역에서 흡수한다고 가정할 때 농촌의 새로운 비농업취업 인구는 1991年까지 925千名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한편 농촌지역 非農業就業人口의 產業別配分을 현재와 비슷한 수준(30%)을 유지하는 것과 40%의 非農業就業人口를 製造業 및 工業部門에 취업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필요한 2차 산업 취업자, 工場 및 工業團地는 <表 32>와 같다.
- 이와 같은 工場을 어떤 형태로 立地시키느냐에 따라서 工業造成의 規模가決定되는데 代案別로 5만평, 10만평 및 20만평의 工團을 건설하고 여기에 각기 工場의 100%, 70%, 60%의 入住를 가정할 때 所要工團의 數는 <表 33>과 같다.
- 그러나 2次產業就業을 전부 工團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事業의 推進을 農村定住生活圈域單位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60%는 工團에 入住시키고 나머지는 分散立地 및 副業團地에서 흡수한다고 가정할 때 1991년까지 10만평 規模의 약 112개 신규공단(1,120萬坪)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表 32 非農業就業人口 중 代案別 2次産業 就業者 工場 및 工業用地

2次産業就業構成	就業人口	工場數 ¹⁾	工業用地 ²⁾
代案(I) : 30 %	278 (千名)	2,610 (業體)	14,047 (千坪)
代案(II) : 40 %	370	3,474	18,697

1) 業體當 從業員 原單位 106.5 名 適用

2) 業體當 부지면적 原單位 5,382坪 適用

表 33 代案別 工團建設 所要規模

2차산업就業	100%工團入住			70%工團入住			60%工團入住		
	5만평	10만평	20만평	5만평	10만평	20만평	5만평	10만평	20만평
代案: 30%	291	141	70	197	99	49	169	85	43
代案: 40%	394	197	99	262	131	65	224	112	56

2) 農工地區의 規模

- 1991年까지 農촌지역에서 감소할 農業就業人口를 大都市地域으로 集中시키지 않고 農村地域에서 흡수한다고 가정할 때
 - 農工地區의 規模는 現在 計劃하고 있는 10,000坪 規模는 擴大될 필요가 있다.
 - 農工地區의 規模는 地域의in 特성을 감안 10,000~100,000坪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工團造成政策의 一元化

1) 工業團地造成 實績과 計劃

- 지금까지 工業團地 造成實績을 보면 67個 地區에 264.87km²가 조성되었다.
 - 產業基地開發: (20個地區) 187.56km²
 - 地方工業장려지구: (25個地區) 55.77km²
 - 其他工團: (22個地區) 21.54km²
- 그러나 地方工團의 대부분이 大都市에 立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地方 및 農村工業開發은 정체되어 있다.

- 第 2 次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1991 년까지 工業團地의 擴大는 98.60 km²로 되어 있다.
 - 既存工團擴大 : 319.29 km²
 - 新規工團擴大 : 98.60 km²
- 이 상과 같은 工業團地의 造成은 <表 36>과 같은 관계법에 기초하고 있다.

表 34 既存의 工團造成實態 , 1983

區 分	工團數	工團面積	入住業體數 (A)	稼動工場數 (B)	B/A
產 業 基 地 開 發	20 개	187.56 km ²	1,010개	696	68.9
○ 중화학공업기지	13	173.85	484	338	75.4
○ 특 수 지 역	7	13.71	562	358	63.7
地方工業장려지구	25	55.77	1,278	1,041	81.5
○ 市 單 位	17	39.32	1,119	1,007	90.0
○ 郡 單 位	8	16.45	159	34	21.4
其 他 工 團	22	21.54	2,964	2,534	85.5
○ 수출자유지역	2	2.94	367	346	94.3
○ 한국수출산업공단	6	0.89	107	95	88.8
○ 기타공업단지	10	16.26	2,297	1,949	84.8
○ 민간공업단지	4	1.45	193	144	74.6
計	67	264.87	5,252	4,271	81.3

資料：建設部 工團造成課, 1984.

表 35 工業團地造成 및 計劃面積의 地域別 分布

區 分	計	市 部	郡 部	단위 : km ²
既存工業團地造成 ¹⁾	319.29	211.76	107.53	
工業團地造成計劃 ²⁾	98.60	49.15	49.45	
計	417.89	260.91	156.98	

1) 建設部의 產業基地開發 및 地方工業장려지구.

2) 第 2 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都市別 工業부지 配分計劃중 1982-91 年까지 공단 신규조성면적.

表 36 工業園地造成의 基礎法

地域區分	根據 法 令		開發主體	支援施設의 種類
	指 定	造 成		
1. 產業基地	產業基地開發促進法 (第 5 條)	產業基地開發促進法 (第 6,7, 8 條)	國家, 地方自治團體 , 產業基地開發公社	①港灣施設, ②工業用水 및 生活用水, ③道路, 鐵道, 軌道 等 流通業務施設, ④電氣 , 通信, 가스, 油類 및 原料의 需給施設, ⑤下水道의 終末處理施設 , ⑥公用의 廳舍, 學校 및 公共建築物 ⑦土地區劃整理事業 및 住宅地造成用地의 整理, 進入道路 및 用水
2.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	地方工業開發法 (第 2 條)	地方工業開發法 (第 4 , 5 條) 都市計劃法 (第 54 條)	國家 (建設部), 地方自治團體 , 法人	
3. 中小企業示範工園	工業配置法 (第 16 條)	工業配置法 (第 20 條)	地方自治團體	道路, 水道, 住宅 等 都市計劃事業, 通信 , 厚生福祉, 職業訓練 , 保健, 醫療, 教育文化 등 支援施設의 整備道路, 給配水施設, 港灣施設 (建設部, 港灣廳)
4. 輸出自由地域	輸出自由地域設置法 (第 3 條)	輸出自由地域設置法 (第 4 條)	國家 (建設部)	
5. 其他工業園地	都市計劃法 (第 17 條) 工業園地管理法 (第 3 條)	都市計劃法 (第 54 條)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 32,35 條) 輸出產業工業園地造成法 (廢止)	地方自治團體 및 個人 國家	

資料：人口定着을 위한 工業立地 計劃研究，國土開發研究院。1982.12

2) 地方工團과 農工地區 造成의 문제점

- 앞으로 農漁村所得源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農工地區를 擴大造成한다고 할 경우 既存의 工業團地 造成計劃과 農工地區造成計劃은 工業團地開發이 중복됨으로써 投資의 效率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제기될 可能性이 높다.
- 뿐만 아니라 이미 造成되어 있는 (특히 人口 10만이하의 市나 郡部에) 地方工團의 경우 아직도 미분양되었거나 공장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農工團地造成의 入住可能性에 문제가 있다.

3) 工團造成政策의 統合

- 따라서 工業團地造成政策을 農工地區로 一元化하여 開發하는 方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既存의 地方工業團地 開發事業을 農工地區와 통합하여 인구10만이하의 中小都市와 農村의 中心都市에 집중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工場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과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장려지구를 農工地區와 일치시키며,
 - 人口 10만이하의 中小都市에 既造成되거나 計劃중인 地方工團을 農工地區로 指定 開發育成하도록 한다.
- 이를 制度의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工業團地造成 關聯法規의 調整이 불가피하다.
 - 既存工業團地 造成은 產業基地開發促進法과 地方工業開發法 등 7個法에 따라造成되고 있다.
 - 그러나 農工地區造成을 擴大할 경우 法體系가 多元化되어 있어 效果的인 事業推進에 제약을 받게 된다.
 - 따라서 工業團地造成關聯法도 農漁村所得源開發 促進法을 調整包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은 工團造成政策의 一元화는 그것이 1960-70 年代 서울과 首都圈, 그리고 大都市 偏中의 工業開發政策을 地方의 中小

表 37 農外就業希望 農民의 就業類型區分

單位：名(%)

就業方法	農業生產繼續與否				計	
	經營形	тал 농업				
		農耕地賃貸	農耕地販賣	小計		
通勤就業希望	85 (65.9)	16 (12.4)	7 (5.4)	23 (17.8)	108 (83.7)	
移村就業希望	-	9 (7.0)	12 (9.3)	21 (16.3)	21 (16.3)	
計	85 (65.9)	25 (19.4)	19 (14.7)	44 (34.1)	129* (100.0)	

* 분류불가능 농민(소유농경지가 없는 농민) 29명 제외

資料：農村人力의 農外就業可能性과 就業類型分析，農村經濟，第2卷4號，韓國農村經濟研究院，1979。

都市，農村中心都市 中心으로 전환 工業의 지방분산을 실질적으로 促進하고，農村人口의 大都市集中을 地方中小都市에서 막을 수 있게 하는 戰略手段이 아닐 수 없다.

다. 農工地區造成 對象地域調整

- 農村住民들의 工場就業希望을 보면 129명의 調查農民中에서 83.7%가 通勤就業을 希望하고 있다.
 - 大部分 農村住民의 經濟活動은 農村定住生活圈의 中心都市인 邑 을 中心都市인 邑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農工地區 造成地域은 地域의 工業立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農村中心都市인 邑單位 (人口 10,000 ~ 20,000名 規模)에 誘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農業構造 調整

1) 農家の 農外所得增大 可能性

- 農家の 經濟活動은 農業活動과 非農業活動으로 크게 區分된다.
 - 農家の 農外所得은 農家家口員의 農業以外活動 (商工業，서비스

表 38 農家經濟活動의 區分

區 分	農家內活動(自營) (On - Farm)	農家外活動(被害) (Off - Farm)
農業活動 (Agricul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般耕種農業, 畜產, 果樹 및 園藝 ○ 林業 ○ 水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業勞勤 (他家雇傭)
非農業(農外)活動 (Non-Agricul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業 ○ 鐵工業(家內手工業 및 副業包含) ○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期, 短期 農外就業 (工場 및 會社, 官公 署等)

업)에서 얻어지는所得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表 38>

- 우리나라 農家の 農外所得은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表 39>
 - 既存統計基準: 32.1 %
 - 日本方式基準: 15.5 %
 - 新로운概念基準: 11.0 %
- 또한 農村工業開發이 促進된다고 할지라도 劃期的인 農外所得率의 增大에는 많은 期間이 必要하다.
- 日本의 農外所得率 增大
 - 1950 年代 (工業化初期)
 - (1950) : 32.5 % → (1960) : 45.0 % (年平均 1.3 %
增加)
 - 1960 年代
 - (1960) : 45.0 % → (1970) : 64.0 % (年平均 0.9 %
增加)
 - 1970 年代
 - (1970) : 64.0 % → (1981) : 85.5 % (年平均 1.5 %
增加)
- 臺灣의 農外所得率 增大 ('80 現在 農村製造業體: 75 %)

- 1960 年代 : (1960) : 34.0 % → (1970) : 51.3 % (年平均 4.3 % 增加)
- 1970 年代 : (1970) : 51.3 % → (1980) : 73.6 % (年平均 2.2 % 增加)

2) 農村工業開發과 兼業農問題

◦ 農村工業開發의 促進은 兼業農의 增加를 不可避하게되며 長期的 으로는 農業生產性向上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農村工業이 高度로 발달된 日本의 경우 農村工業 開發로 인하여 높은 農外所得을 올리고 있으나 零細小農業構造의 지속으로

表 39 韓日間의 農外所得構造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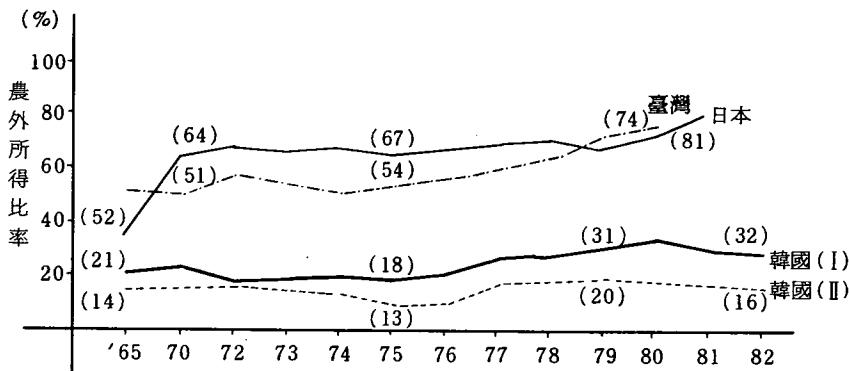
區 分	韓 國 (1982)			日本(1981) %
	I 1)	II 2)	III 3)	
農業所得	千원	
農產加工	-	-	5.0	
兼業所得	70.5	70.5		(10.2)
林水產業	20.8	20.8		(1.7)
農業서비스업	△ 6.7	△ 6.7	△ 6.7	
商工礦業	34.2	34.2	34.2	(7.4)
일반서비스업 및 기타	19.4	19.4	19.4	(1.1)
대동식물증식	2.9	2.9	-	
사업이외수입	1363.3		437.0	(89.8)
농업·노임	86.2	86.2	-	(0.7)
기타노임·급료	437.0	437.0	437.0	(80.9)
재산적수입	97.4	97.4	-	(8.2)
피증 및 송금보조	657.8	-	-	
가사수입 및 기타	84.9	-	-	
농 가 소 득 계	1433.8	691.1	488.9	3807.6
농 가 소 득	4465.2	4465.2	4465.2	4805.4
농 외 소 득 비율	32.1	15.5	11.0	80.5

1) 既存統計方式

2) 日本方式

3) 新로운 概念

그림 11 韓國, 日本, 臺灣의 農外所得比率比較



※ 韓國(I) : 既存統計方式, 韓國(II) : 日本計算方式

※ () 내 숫자는 農외소득비율임.

新農業構造改善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 日本의 農家形態別 主要農家經濟指標를 比較하면 兼業農家들은 大部分이 農業을 副業化하고 있으며 專業農에 比하여 農業生產性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 農家所得이 專業農의 1.8 배 이상이나 높지만
 - 農業勞動生產率은 전업농의 55 %에 불과하며
 - 고정자본 生產率도 전업농의 62 %에 불과하다.

3) 農業構造 改善方向

- 農村工業開發이 促進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農家の 所得問題를 農

表 40 韓國, 日本, 臺灣의 兼業農家 分布

單位 : %

區 分	專業農家	兼業農家			計
		1種	2種	3種	
韓國(1982)	81.4	8.6	10.0	18.6	100.0
日本(1983)	13.1	16.2	70.7	86.9	100.0
臺灣(1980)	9.1	45.7	45.2	90.9	100.0

資料 : 韓國開發研究院, 農外所得增大方案에 관한 연구,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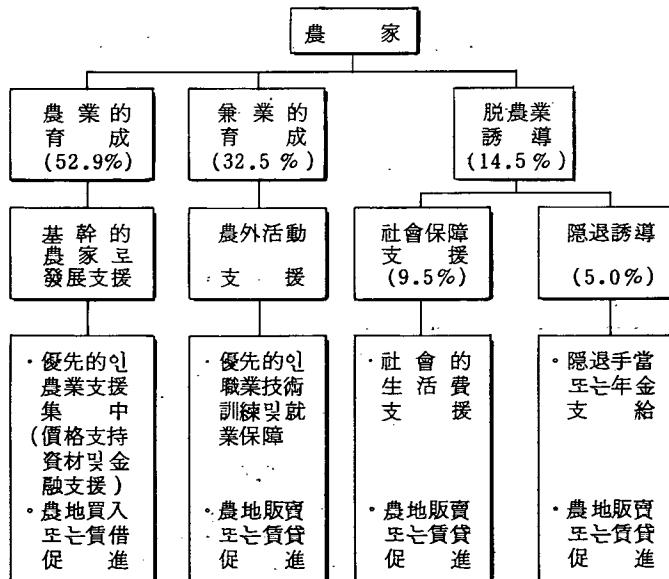
外所得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 耕地 2.0ha 이상 大農의 경우 大部分의 所得을 農業所得에 의존하고 있다.
- 그러므로 農村工業開發이 促進될 경우 個別農家들의 將來希望과

表 41 日本의 專業業別 主要農家經濟 指標, 1982

主要指標	單位	專業農 (A)	兼業農		B/A	C/A
			1종(B)	2종(C)		
농 가 소득	1,000 원	2896.2	5213.9	5405.2	1.80	1.87
농 업 소득	1,000 원	2462.0	3,333.4	439.5	1.35	0.18
농 외 소득	1,000 원	434.2	1,880.5	4,965.7	4.33	11.44
농업의존도	%	85.0	63.9	8.1	0.75	0.10
경작면적	a	252.7	247.2	82.9	0.98	0.33
농업노동생산성	원/10시간	6448	8034	3567	1.25	0.55
고정자본생산성	원/1000원	446	544	278	1.22	0.62

그림 12 農家發展政策의 構造



營農條件 등을 고려하여 農家들을 選擇的으로 育成할 수 있는 農業構造調整이 必要하다.

- 따라서 兼業的 育成과 脫農業을 誘導할 農家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職業訓練과 就業斡旋을 추진함으로써 農業의 構造改善과 農村住民의 非農業活動을 促進해야 한다.

마. 農村人力開發의 적극적 推進

- 農村工業開發이 農家の 農外所得 增大와 연结되기 위해서는 農家 家口員의 農工地區內 就業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 家口員을 대상으로한 직업기술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
- 安城工團의 경우 관리사무직 및 技術者는 他地域 都市출신이 많 은데 비해 지역주민은 숙련공, 반숙련공 및 노무자와 견습공으 로 就業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表 42>.
- 農家 家口員을 대상으로한 직업기술 교육, 훈련은 농가의 성격상 장기적으로 탈농업유도나 겸업적 육성이 바람직한 농가의 청장년층 (20~40代)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 42 地域 및 職種別 工場就業實態

單位: 名, %, 千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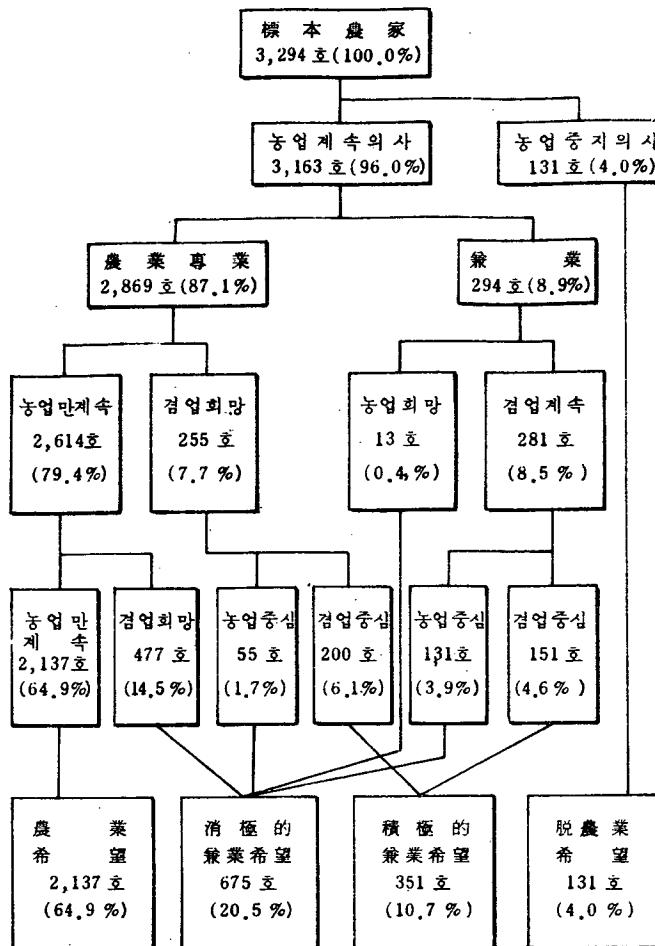
職種別	地域別 안성군내			타지역 도시			타지역 농촌			計			월평균임금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남	여
89 (35.3)	48 (54.8)	41 (54.8)	138 (54.8)	123 (60.7)	15 67	1 (14.3)	25 65	22 16	3 (14.3)	252 591	193 227	59 364	304.2 201.2	141.1 117.9
28 (25.0)	23 383 (64.8)	5 143	68 99	67 284	100 (24.2)	43 40	16 87	1 28	1 37	112 (100.0)	106 221	6 311	296.5 155.0	169.0 106.3
397 (74.6)	141 120 (64.5)	256 61	48 37	40 (9.0)	28 (32.8)	8 33	87 (2.7)	40 5	47 5	532 (100.0)	221 116	311 70	155.0 140.8	106.3 102.3
97 (68.8)	47 83	50 37	11 (7.8)	6 5	5 (23.4)	5 11	33 22	5 11	1 22	186 (100.0)	141 64	77 77	120.0 120.0	87.0
計	1,114	441	673	469	364	105	231	122	109	1,814	927	887	203.0	120.6

註 : 안성에 入住한 77 기업체중 24개업체를 표본조사 분석

資料 : 安城定住生活圈 開發을 위한 工場調查, 1983

그림 13 經營主의 農家發展指向에 대한 意思에 따른 農家分析, 1982

단위 : 호, %



資料：崔洋夫外,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p.134. 1983.12.

- 1982年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 對象農家中 3,294호에 대한 政策類型을 區分하면 兼業적 육성 대상농가 32.5%, 탈농업 유도 대상 농가 가운데 社會保障 援助對象은 9.5%로서 모두 42.0%나 됨.
- 전국 農가호수를 200만호로 계산할 때 약 84만호가 兼業적 육성 또는 사회보장지원 대상농가가 되며, 호당 평균 1명씩을

非農業就業 대상으로 할 때 약 84 만명이 됨.

- 1982년 현재 직업훈련기관은 공공훈련기관이 84개, 사업내 훈련이 289개, 인정훈련기관이 23개로 396개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대도시 혹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 따라서 농공지구내의 就業을 담당할 小規模 職業訓練所를 농공지구에 부설하고 지역의 민간인 경제단체(상공회의소등)가 이를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바. 地方 및 農村地域의 工業立地環境改善과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擴充

- 地方 및 農村工業의 擴大 開發을 위해서는 工業用水, 動力, 通信 등 工業立地環境의 改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동안 地方工業開發施策의 일환으로 用水, 引込鐵道, 進入道路, 港灣施設, 工業用地造成등 產業基盤施設을 還充해 왔으나 아직도 大都市 工業立地에 비해 저조한 實情이다.
- 따라서 定住生活圈單位로 社會間接資本施設과 生活便益施設을 擴充함으로써 地方 및 農村地域의 工業立地環境을 적극적으로 改善 해 나가야 한다.

表 43 職業訓練形態別 訓練實績, 1982

訓練機關種類	訓練所數	訓練職種數	訓練人員(명)	備備
公 共 訓 練	직업훈련관리공단	24	29	17,860
	정부기관	42	42	7,806
	지방자치단체	13	26	7,548
	미 8군한국인종업원전직훈련	5	13	440
小計	84	66	33,654	
事業內訓練	289	116	40,338	
認定訓練	23	42	7,564	
合計	396	156	81,556	

資料 : 職業訓練事業現況, 勞動部, 1983.

表 44 業種別 立地條件別 立地重要度 (設問調査結果)

単位: %

	用地確保	用水需給	市場接近	動力需給	通信便利	労動力確保
食 料 品	24.5	27.1	22.2	3.9	1.7	20.6
飲 料 品	29.4	37.6	21.3	3.5	-	8.2
織 繩	22.7	15.4	24.5	6.4	1.5	29.5
衣 服	22.1	2.4	24.6	4.3	3.1	44.5
가 족	24.8	17.7	19.2	1.5	-	36.8
각 족 신	20.1	5.6	27.7	2.9	1.4	42.3
나 무	28.8	5.5	34.2	6.8	1.4	23.3
家 具 , 建 具	28.5	6.1	32.7	4.0	6.1	22.6
印 刷 , 出 版	16.3	4.1	38.8	2.1	16.2	22.5
石油, 石炭, 營業品	19.0	9.0	50.6	12.4	-	9.0
其 他 플라스틱	16.7	10.0	31.7	10.0	-	31.6
고 무	18.8	15.5	35.6	5.0	1.5	23.6
종이, 종이제품	22.2	27.3	25.9	8.1	0.9	15.6
產 業 用 化 學	27.4	17.9	32.7	8.4	-	13.6
其 他 化 學	27.4	22.2	26.7	5.9	4.4	13.4
陶 磁 器 , 磁 토	22.7	21.6	22.7	8.0	1.1	23.9
유 리	28.6	26.3	23.9	10.0	2.5	8.7
非 金 屬 鑛 物	31.2	13.9	36.5	3.4	0.1	14.9
第 1 次 鐵 鋼	39.8	9.3	23.7	7.6	0.1	19.5
第 1 次 非 鐵	11.1	6.7	53.3	16.2	1.6	11.1
金 屬 製 品	23.0	7.3	35.6	5.7	2.5	25.9
一 般 機 械	21.7	3.9	39.7	8.4	2.8	23.5
電 氣 機 械	20.7	3.1	39.0	8.0	3.4	25.8
輸 送 用 機 械	34.7	3.6	31.2	9.9	-	20.6
精 密 機 器	13.9	7.0	27.9	7.0	2.4	41.8
其 他 製 造 業	15.1	9.7	26.8	3.5	3.5	41.4

註 : 中小企業應答基準

資料 : 國土開發研究院, 工業立地計劃研究, p.78, 1982.12.

사. 行政支援體系의 再整備

1) 行政支援體系의 問題點

-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施行令」에 따른 農工地區의 指定과 造成 및 이와 관련된 行政體系를 要約하면 <그림 14>, <그림 15>와 같다.

2) 行政支援體系의 再定立

- 現實的으로 農工地區의 造成 및 開發에 있어서 中央 및 地方의 여러 機關이 관련되어 있어서 推進上의 混亂과 非效率을 야기 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政府는 基本方針을樹立하고 各種의 基本計劃을 전면적

그림 14 農工地區開發 關聯部署와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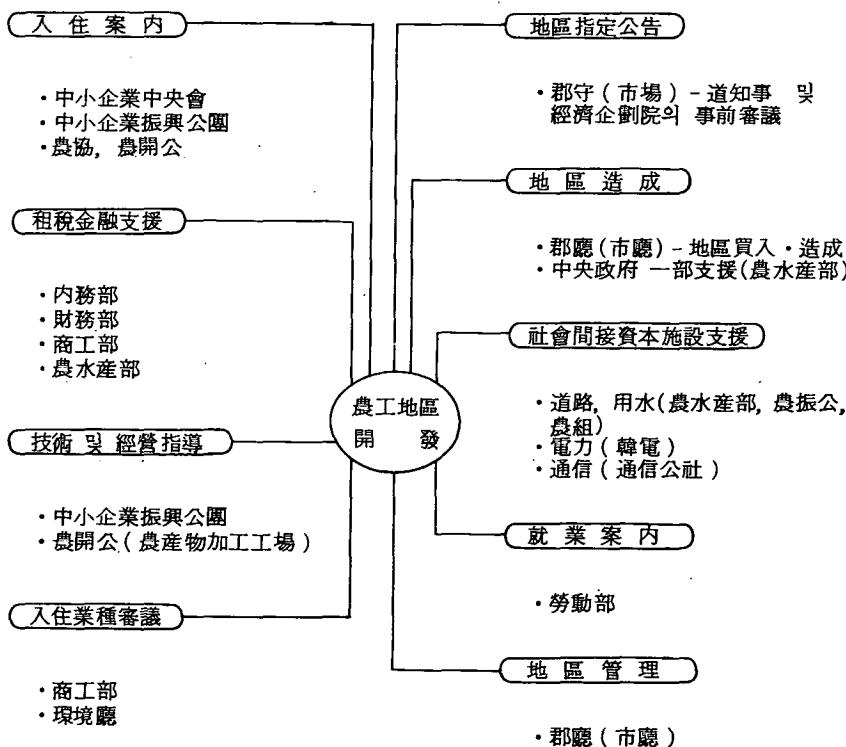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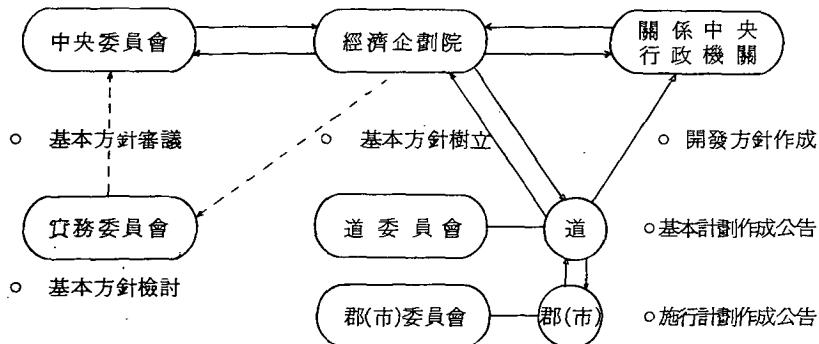


그림 15 行政推進基本體系



- * 中央 및 實務委員會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公務員과 專門家로 構成
- 關係中央行政機關 : 農水產部, 內務部, 財務部, 商工部, 勞動部, 建設部, 水產廳, 環境廳

으로 再檢討하여 國家豫算에 反映하는 등의 行政業務을 效率的
으로 推進하기 위한 상설전담기구를 설치 (例: 假稱, 農村工業
開發事業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事業團」의 기능은 基本方針의 樹立 및 基本計劃을 檢討하
하고, 關係機關과의 業務를 調整하여,豫算의 確保 및 事業의
支援을 擔當하도록 한다.
- 또한 農工地區造成 및 開發에 있어서 中央部處의 機能과 役割
이 明確히 設定되어야 한다.

그림 16 農工地區開發行政推進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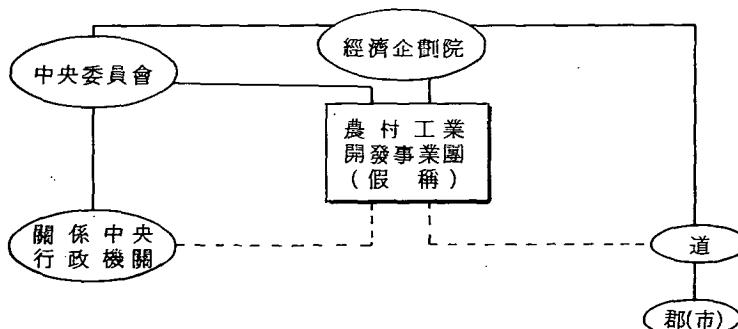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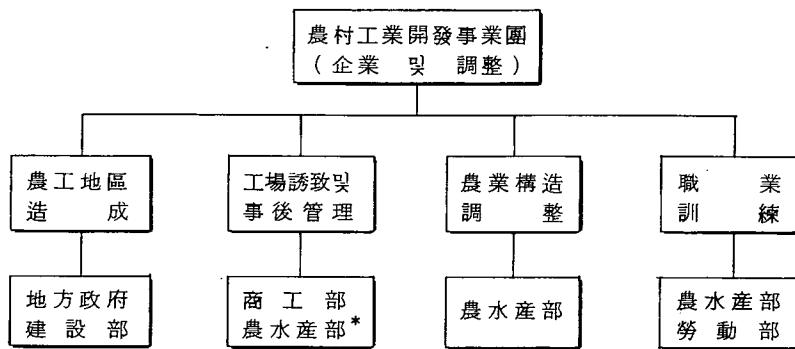


그림 17 農工地區造成 및 開發에 대한 中央部處의 機能과 役割



* 農漁村 副業團地造成 및 農產物加工工場

- 農工地區造成 : 建設部, 地方政府
- 工場誘致 및 事後管理 : 商工部, 農水產部
- 農業構造調整 : 農水產部
- 農村人力開發 : 農水產部, 勞動部

3) 行政支援의 範圍와 限界設定

- o 農工地區의 造成에는 用地買入費와 地區造成費 및 其他 부대시
설비의 직접투자와 기타 支援事業이 있으며, 직접투자비의 경우
地方自治團體 부담과 國費負擔 및 기타 관련기관의 投資로 구
성된다.
- o 그러나 地區造成에 필요한 政府支援의 範圍와 限界에 대한 基
準을 設定하고 있지 못하여 計劃樹立에 차질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政府支援의 項目別, 財源別 支援規模와 基準을 우선적으
로 設定해야 한다.
- o 뿐만아니라 地區造成 完了후 入住業體들에게 분양할 때 政府支
援으로 수행되는 投資의 어느정도를 분양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事前의in 規定이 있어야 한다.

4) 土地利用上의 問題 調整

- o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第 10 條에 의하면 都市計劃法, 山林法

등에 포함된 地域에서의 事業에 대해서는 調整하고 있으나 國土利用管理法에 지정된 耕地地域, 開發促進地域, 山林保全地域 등에 대해서는 言及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農工地區 對象地가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해 開發이 規制되고 있어서 制度的으로 이에 대한合理的인 調整이 필요하다.
- 그리고 農工地區造成과 관련 불가피하게 제기될 農地轉用問題에 대한 基本方針이 樹立되어야 한다.

5) 農工地區造成 投資財源의 調整

- 經濟企劃院 (農業投資方向, 1984.4)에 의하면 農工地區造成 事業費의 일부는 農水產部의 農業用水 開發 事業費에서 充當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 農工地區 造成에 따른 中央政府의 投資財源은 기본적으로 農業部門의 投資調整이 아닌 中央行政機關의 정책 방향조정을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 建設部의 工團造成事業 投資財源을 農工地區 造成事業에 調整
- 이와같은 방법에 의한 投資財源의 확보는 國家的인 차원에서 大都市 中心의 政策을 地域均衡開發政策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意義를 가지고 있다.

6) 地方政府의 機能強化와 民間人經濟團體 活性化

- 地方經濟의 活性화와 地域의 均衡開發을 위해서는 道 및 郡單位의 企劃機能強化를 통하여 各級 地方自治團體가 自律的으로 基本計劃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관련 中央行政機關豫算에 반영된 事業費를 道單位의 基本計劃에 따라 Package 形式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地方의 商工會議所와 中小企業協同組合등 民間人經濟團體를 活性화함으로써 그 地方出身 事業家의 地方內 工場誘致와 地方企業體에 대한 技術 및 經營指導, 製品의 販路促進과 原料의

表 45 安城地域에서 企業活動上 어려운 點

	아주不便	약간不便	本社擔當	不便 없음	計
1. 稅金計算	2(9.1)	4(18.2)	11(50.0)	2(22.7)	22(100.0)
2. 企業會計진단	4(18.2)	2(9.1)	12(54.5)	4(18.2)	22(100.0)
3. 企業情報수집	6(27.3)	4(18.2)	10(45.5)	2(9.1)	22(100.0)
4. 輸出相談	7(31.8)	1(4.5)	11(50.0)	4(18.2)	22(100.0)
5. 從業員의 教育	8(36.4)	8(36.4)	-	6(27.2)	22(100.0)

資料：安城圈 開發을 위한 工場調查, 1983.

共同購入등 제반 事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특히 企業稅務나 會計진단, 企業情報蒐集 및 輸出相談, 從業員教育등은 個別企業으로서는 自體解消이 매우 어려운 實情으로 民間人經濟團體에서 「企業活動支援센터」를 設置 運營할必要가 있다.

VI. 要約 및 結論

-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法」에 의한 農村工業의 擴大開發은 단순히 農外所得의 增大뿐만 아니라 農業의 構造改善과 地方經濟 및 農村經濟의 活性化로 地域間, 產業間의 均衡開發을 成취함으로써 農村人口의 定着과 都市, 農村問題의 累積的 惡循環을 해소하는 效果的인 政策이 된다.
- 그러나 既存의 農工地區造成計劃은 그 規模가 너무 零細할 뿐만 아니라 位置나 業種의 選擇은 물론 關聯制度와 推進行政體系, 投資財源의 擔保등 여러가지 問題點을 갖고 있다.
- 이와같은 問題들에 대한 신중한 檢討가先行되지 않고 서둘러 事業을 推進하는 것은 地域의 均衡開發은 고사하고 農外所得의 擴大도 어려우며 過去 새마을工場의 전철을 담습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의 農工地區造成 및 農村工業開發의 方向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工地區造成을 既存의 地方工團造成과 統合하여 人口 10 萬以下의 中小都市와 農村中心都市에 중점적으로 開發하고 이와 關聯된 制度 및 行政推進體系를 一元化해야 한다.

둘째, 農工地區를 定住生活圈의 中心都市에 立地시키고 地方 및 農村의 定住生活圈開發이란 次元에서 地域社會의 下部構造와 各種 편의시설들을 綜合的으로 開發하여 農村에 立地한 工場의 不利함을 克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째, 既存의 農工地區의 規模를 地域與件에 따라 1 萬坪~10 萬坪 정도로 擴大하여 地域住民들의 雇傭機會를 增大시키고 地方의 均衡開發을 積極的으로 推進해야 한다.

이와 같이 農工地區造成의 基本方向을 前提로 農村工業을 積極的으로 開發해야 하며, 이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工業立地開發政策 및 關聯法規의 調整과 支援行政體系의 確立 및 投資財源의 合理的 인 確保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機能強化와 民間經濟人團體를 活性화해야 하며 農業構造改善과 農村機能人力開發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農村工業化가 곧 住民의 所得增大 및 地域經濟의 活性화와 連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以上과 같은 方向에서 農工地區 및 農村工業開發을 성공적으로 遂行하는 것은 곧 地方 및 農村經濟의 均衡開發에 의한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成長果實의 地域間 均等한 配分으로 正義로운 民主福祉社會建設의 國家發展目標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討 議

司會（金榮鎮，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현의상 발언하실 기회를 지정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地方에 계시는 분들이 의문도 많고 애로도 많을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中央에 계시는 분들은 地方事情을 듣는 것이 政策을 조정해 나가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신 企劃官, 農政課長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다. 먼저 강원도의 朴東洵 農政課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朴東洵（江源道 農政課長）：많은 農村人力이 도시의 공장에 취업함으로써 현재 農村地域에서는 農繁期의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工業團地를 지방에 유치해서 많은 노동력을 年中雇用 할 경우 농촌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년중 계속 穢動하는 業體보다 農閑期 유휴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季節的인 企業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既造成한 地方工團에 공장입주가 잘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입주한 업체도 穢動率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地方工團 및 새마을工場이 유휴 상태에 있는데 이를 活性化하는 것이豫算이나 行政能率面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를 活性化하는 方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司會：江源道 農政課長님께서 농공지구를 조성할 경우 농번기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므로 季節企業을 유치하는게 어떻겠는가？ 또 기조성된 地方工團의 입주 및 穢動不振을 活性化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 다음에는 息淸北道 企劃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孔秉善 (忠淸北道 企劃官) : 離農의 증가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地方經濟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할 때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農工地區造成은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장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단위 또는 기업체 모두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연후에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는 工場誘致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농어촌 소득원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司會 :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농외소득이 가장 적은 道의 하나인 全北 企劃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柳鳳永 (全羅北道 企劃官) : 저희 道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米麥 위주의 농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農家所得의 증대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즉 소득의 70 %가 米麥에 의존하고 나머지 30 %가 特用作物이나 副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 및 農村工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농공지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농공지구의 조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북 지방에 기조성한 4 개의 地方工團에도 入住業體가 없어서 유휴시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세째, 道자체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심화 될 것이 우려됨으로 地方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中山間部의 농촌지역에 농공지구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단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인력 개발을 담당 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농공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농촌에서 생산되는 農產物을 組合 형식으로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組合 형태의 공업도 아울러 고려해 줌으로써 山間部나 中間部가 고르게 혜택을 보고, 농촌인구를 현지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원문누락

원문누락

유출 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教育機會 확대, 즉 地方大學의 育成이 필요하다. 경남의 경우 인구 70명당 대학생이 한 사람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남 교육이 질려낸 많은 유능한 人材가 서울로 流出되고 있다. 따라서 地方大學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와 함께 지역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관계 부처의 업무체계 조정 문제는 崔洋夫박사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司會：下部構造나 人力分析을 잘 해야 한다는 것과 就業 및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經濟企劃院과 農水產部에서는 農工地區 규모를 1萬평정도로 조성할 방침을 밝혔으나 崔洋夫박사는 10萬평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제 발표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는 小規模 農工地區에 공장 몇 개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종업원 규모 100명 정도의 공장이 17~20개는 들어갈 수 있는 中大規模 農工地區를 조성해야만 金融서비스나 전화, 병원, 직업훈련소 등이 부설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제주도企劃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金玉斗(濟州道企劃官)：農工地區開發, 특히 用地를 조성하는데 국가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할 경우 나머지를 道나 市·郡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地方費負擔能力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제주도의 여건상 육지에서 원료를 들여 오고 제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地方特產物加工 등 유치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의 경우 이미 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工業開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農工地區 조성으로 공업개발을 하는 것보다 현재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觀光農業 분야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즉 農工地區 개발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各道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 할 수 있도록 道의 재량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司會：이제까지 各道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道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内務部에서 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하시겠다.

朴贊植(內務部 새마을기획係長) : 저는 새마을所得과 住民所得 추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새마을 소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高所得要因 또는 低所得要因을 파악해 본 결과 高所得 마을의 경우 賦存資源을 所得源으로 개발하고, 流通改善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가 창의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한 반면 低所得 마을은 창의력이 없고 부존자원이 있어도 개발할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農村所得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農業所得을 주로 하면서 農外所得을 개발해야 하며 소득의 분배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다음에는 생산물의 가격을 보장해 주고 정부차원에서 流通構造를改善해야 하는데 이때 가격보장의 방법으로는 농촌지역에 농산물加工工場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공지구의 규모를 확대하여 地區化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이 주로 취업하게 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農工地區 지정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산물 가공 등 농업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경영지도와 사후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중간 상인 개입이 직접 원료구입과 제품판매를 통해 價格安定과 流通構造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다.

司會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經濟企劃院과 農水產部의 局長님께서는 1만평 규모의 農工地區를造成하되 환경공해가 없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業種制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고, 경남에서는 취업기회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및 기타 下部構造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농공지구의 규모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崔洋夫박사는 좀더 적극적으로 업종에 구분 없이 규모를 확대해야만 規模의 經濟와 기타 工團造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데 비해 內務部에서는 농업관련 산업에 제한시키되 工團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아직까지도 농공지구 조성을 착상하게 된 政策背景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主務部署인 經濟企劃院에서 業種選擇이나 資金支援 등을 中小企業振興工團에 맡기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의 기획조사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다.

洪瑛哲（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企劃調查部長）：우선 農村地域의 工業化는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농촌이나 도시공장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금 부족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공장의 안전 積動을 위해선 中小企業振興工團이나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金融支援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기업체들이 金融受惠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制約要件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이 담보 위주이기 때문에 산간오지의 農村工場으로서는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農工地區 입주업체의 事業性을 감안하여 信用保證基金 제도를 실시하면 담보부족에 의한 금융지원 수혜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가 있다.

또한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中小企業體의 대부분이 非工業地域에 立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할 공장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國稅 중 投資準備金의 인정이나 地方稅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免稅惠澤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法人稅나 特別賦課稅 또는 讓渡所得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전 후의 가액이 이전 전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免稅額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토지가격이 지방보다 낮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전 후의 공장들이 실제 稅金惠澤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면제되는 法人稅와 特別賦課稅에 대한 防衛稅는 현재 重課稅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된 차액은 법인의 특별이익이 되어 非公開法人은 지방배당세의 증가를 가져와 累進綜合所得稅에 가산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法人稅 등의 면세를 土地價格基準에서 面積基準으로 바꾸는 制度改善이 필요하며 공장 이전에 따른 방위세의 재검토, 工場讓渡差額에 대한 지상배당소득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후 조성될 농공지구의 공장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事業家들이 스스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는 다섯 개 이상의 동일한 업종이나 관련업종이 모이면 團地造

成이나 協同化事業을 추진할 수 있는 「協同小組合制度」가 지난 해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원료의 공동조달이나 판로개척에 연계성을 갖도록 정부당국에서는 農工地區와 관련시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司會：만약 稅制支援면에서 그런 배려가 가능 하다면 도시의 공장들이 농촌으로 이전할 것인가요？

洪瑛哲：현재 非工業地域에 있는 업체나 公害業體 중에서 수질오염업체는 농촌으로 갈 수 없겠지만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해서 대도시에서 반드시 떠나야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들어 인쇄나 봉제 등 도시형업종(146個)은 금년 말까지 필연적으로 서울을 떠나도록 명령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배려에 의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연기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司會：지금 말씀하신 세제면에서의 지원, 특히 讓渡差額에 대한 地方配當稅를 면제하면 도시에서 폐 많은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 같다. 즉 현재 서울에서 공장을 1억원에 팔고 시골에 가서 3천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면적 단위로 바꾸어 서울에서 확보한 면적만큼 지방에서 확보할 경우 免稅를 하면 보다 많은 도시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해 갈 것이다.

국가의 20~30년의 장래를 내다보면 首道圈 인구의 地方分散과 農村人口의 정착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즉 현재와 같은 대도시의 人口集中은 길 밑에 길을 뚫고 집위에 집을 지어도 交通問題나 住宅問題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즉 농촌지역의 人口流出에서 비롯된 수도권 인구집중은 농촌인구의 정착에서 해결하는 것이 도시의 社會間接資本 확충에 의해 해결하는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建設部에서 말씀해 주시겠다.

李在春（建設部, 地域計劃係長）：建設部에서는 國土開發의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이고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國土綜合計劃法에 의거해서 全國計劃과 特定地域計劃 그리고 道 및 郡計劃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道計劃은 1983년에 경기도와 제주도만 제외하고 전지역이 완료되었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農工地區의 지정도 그 바탕위에서 이미 수립한 道計劃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業種選定의 경우 미리 방침과 범위를 정해서 妥當性을 분석한 후에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司會： 다음에는 國土開發研究院의 劉永暉 박사님께서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코멘트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劉永暉（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먼저 세 분의 主題發表를 나름대로 해석하면 農政局長께서는 農漁村所得增大的 필요성과 방향을, 경제기획원의 政策調整局長께서는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고 崔洋夫박사는 研究라는 입장과 政策을 감안해서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인데 비해 최박사는 적극적인 代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 각 지방에서 오신 실무자들은 환영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經濟企劃院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의 배경을 이제 더 이상의 농토확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살과 보리 등 식량의 생산도 한계에 달하여 농업소득 증대가 곤란하여 農外所得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일본과 대만의 예로써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地方化時代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방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지방 사람들로 부터 나온게 아니라 중앙에서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추진배경에서 언급했듯이 農漁村 所得源을 개발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이 지방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中央政府가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므로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동안 國土開發研究院에서 특히 工業立地를 다루면서 몇 가지 조사결과를 보면 地方工業은 그 지방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 20~30 만의 중소도시에서도 공업개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의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에서는 1道1個主義的 農工지구 조성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줄로 알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農工地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공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좀더 준비기간을 갖고 차실한 기반 위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農工地區의 추진과 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업, 즉 農村所得源 개발

과 공업의 진흥과는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地方工業을 개발하더라도 이것이 전국의 2次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二元的인 추진 즉 工業開發政策을 추진함과 동시에 農外所得 증대 차원에서의 농공지구 개발은 體制의 一元化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의는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농공지구의 규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약 3만평 정도로 1개 郡當 1개 農工地區를 조성하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郡當 2개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3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司會：지금 말씀하신 農工地區의 규모의 문제, 農家所得源 개발과 地方工業 육성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과 이 시점에서 지방공업이 활착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매우 사려깊은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에는 中小企業振興工團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시는 사업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朴金一（中小企業振興工團 事業 2部長）：農工地區造成과 관련해서 立地造成, 工場入住 및 支援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立地問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원자재 구입경로, 판매경로, 인력확보 및 각종 서비스시설이 일치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종래의 각 地方自治團體에서 地方工業團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계획입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업체로서 운영될 수 있는 지점에 자유입지하도록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工場入住는 지방의 특산물, 예를 들어 쟁무의 나전칠기, 강화의 화문석, 담양의石材, 제주도의 산호 등 地方特化産業을 우선적으로 농공지구에 입주시키는 것이 좋겠다.

支援問題에 있어서 우선 資金支援의 경우 1983년 韓銀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製造業의 평균 自己資本 利益率이 9.7%인데 비해 농공지구 지원자금의 금리를 10%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로 하는 것은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農工地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금리는 설립 이후 최소한 3년 정도는

特惠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原料購入 및 販賣問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조달 및 판매를 알선하는 제도를 차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人力問題에 대해서는 기능인력에 관한 한 해당지역에 있는 人力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근지역에 있는 인력까지 감안해서 調達計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司會：다음은 農產物과 관련된 流通問題에 대해서 農漁村開發公社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宋種益（農漁村開發公社 調査部長）：이번 「農漁村所得源開發法」은 과거의 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선 法案을 農水產部나 商工部가 아닌 企劃院에서 입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힘이 있는 法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종래의 법체계와는 달리 下向式이 아니라 上向式이라는 점이다. 즉 기본방침만 중앙정부기관에서 세우고 경제기획원이 이를 조정하여 내려보내면, 기본계획은 道에서 세우고, 施行計劃을 市·郡에서 세운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저는 農漁村所得源開發計劃의 수립 및 추진을 產業政策次元에서 地方自治制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현재 그 地方政策의 담당자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의 專門家를 참여시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立地選定과 業種選擇問題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지방에서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일 市郡에서 해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선 施行期間를 늦추고 擔當者들에 대한 교육부터 실시해야 될 것이다. 즉 道나 郡의 實務擔當者들을 몇 주간 합숙시키면서, 이 분야 관계 전문가를 모셔 심층적인 理論體系에서부터 구체적인 事例研究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문제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새마을공장은 왜 실패했는가? 그중에서 어떤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실제 조사도 하면서 심층분석을 해 들어가야 앞으로 그러한 새마을 공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漁夫한테 그물을 뜨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하는 효과적인 方策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선 교육부터先行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저희 「農漁村開發公社」는 1967년에 설립되어 17년동안 農·林·畜·水產

物 가공공장의 입지선정, 건설 및 운영, 경영, 기술지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立地問題와 관련하여 저희가 얻은 경험중에서 몇 가지 事例를 말씀드려 보겠다. 1969년에 제주도 남제주와 서귀포 근처에서 감귤농장을 하는 분과 農開公이 합작투자를 하여 감귤냉장저장고를 하나 지었다. 그러나 저장한 풀을 서울 등 도시지역에 수송하는 문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해태에 불하하고 말았다. 해태는 그곳에 액즙공장을 지어, 액즙원액을 큰 드럼통에 넣어서 서울공장에 보내면 여기서 캔딩을 한다. 즉 消費地에서는 小包裝만 하는 셈이다. 이렇게 하니 포장비도 크게 안들 뿐만 아니라 상자 등의 필요없는 物材費, 輸送費의 절감 등 여러가지 利益을 얻을 수 있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 이事業은 濟州道民의 宿願事業으로서 農開公의 첫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나 실패하고 말았다.

또 하나의 사례는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온저장고를, 대구(협성농산)와 무안(대아농산)에 지었다. 공사는 두 지역 모두 3월에 착공하여, 대구는 협성농산의 성재경 사장의 독려에 힘입어 6월 말 준공을 하여 7월초부터 양파저장이 시작되었으나, 양파산지인 무안에서는 8월에야 준공되었다. 그래서 무안에서는 그동안 약적해놓은 양파가 비가 오니 일부 떠내려가고, 썩고하여 대아농산은 첫해부터 부실기업화되었다. 그 때문에 무안에서 양파를 저장해 놓은 사람은 망하고 대구에서 양파저장하면 돈번다고 인식되어 있다. 대구 근처에는 60여개의 양파저장고가 있으나 무안은 10개 미만의 저장고가 있을 뿐이다. 15~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사례는 입주자 선정과 입지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 하겠다.

양파얘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더 하겠는데, 요즘 비닐農業의 발달로 양파생산이 周年化되고 있다. 현재 대관령 산간 600m 이상 지대에서는 봄에 싹을 틔워 여름에 심는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을 한 남해안 지방에서는 여름에 심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생산을 한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몇 해안에 전지역에서 양파생산의 주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처럼 양파생산이 주년화되면, 양파를 주저장물로 하는 저온저장시설이 과잉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저온저장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언제쯤 우리나라로 이려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경우, 튀김류 즉 감자, 새우튀김 등을 공장에서 튀겨 저온저장을 한다. 이제 가정에서는 기름넣고 끄으름 내면서 튀기지 않

고 간편하게 사서 먹는다. 앞으로 콜드체인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공장들도 농촌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 流通過程을 보면 產地에서 선별과 포장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流通費用을 줄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副資材 등이 산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資材工場도 농촌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사례를 들면 한이 없지만, 우선 市·郡에서 이런 업종을 선정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教育訓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入住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규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나 農產資材工場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같은 造立產業의 경우, 부품이 수천 가지인데 반드시 한 공장내에서 모든 部品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각종 부품공장들이 자동차공장 부근의 農工地區에 입주하여, 농촌인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工團入住業體의 選定시 연관산업을 한데 묶는 소위 일본식의 콤비나트를 생각할 수 있다. 밀가루공장과 땅공장, 밀기울을 이용한 사료공장 등이 한데 묶여질 때 여러가지 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조금전에 기획원의 최과장 말씀으로 앞으로 中小企業振興工團에 農工地區 운영을 다맡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農開公도 기술과 경영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저희들 의견은 農林畜產物에 관한 가공공장을 지도하는 것 등은 農開公에 맡기는게 여러 가지 가능면에서 좋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 金融支援問題인데, 저희가 農工地區를 조성하는데 자금지원은 할 수 있지만, 시설자금, 원료자금은 취급하고 있다. 내년부터 IBRD에서 농업부문3차차관이 들어오는데, 농립축수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1억 달러가 되며, 여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자금까지 합치면, 약 1,000 억원 이상이 될 듯하다. 이것은 앞으로 4~5년 사이에 투자할 수 있는 財源이기 때문에 農工地區 개발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과장님이 말씀한 가운데 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거론한다. 이번에 바나나가 7,000 톤이 들어와 市中에서 팔리고 있다. 이 때문에 수박, 참외 값이 하루에도 20~30%씩 떨어져 큰 걱정이며 자칫 잘못하면 바나나를 수입해서 中小企業振興資金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고, 그렇

게 되면 농촌은 農工團地가 이뤄지기 전에 큰 타격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바나나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바나나輸入에서 얻어지는 差額이 農漁村所得源開發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再投資됨으로써 農外所得의 증대와 地域의 均衡發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혹시 농민들이 바나나를 수입해서 기업가를 위한 農工地區 만드는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까 보아 한 말씀 드린 것이다.

司會：宋부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현재 수입한 바나나는 국제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求償貿易形式으로 들여온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기왕에 들여온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니, 이점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리고企劃院崔課長님 말씀이 최소한 60~70억의 바나나資金을 이용할 수 있다 하였을 때, 제가 이런 적은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農漁村開發公社의 IBRD 차관 자금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못했다. 농림축산물 저장·가공산업에 대해서는 그쪽의 약 800억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宋部長께서 지적하신 市郡의 農工地區 관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인데, 저희 研究院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실무진을 오시게 한 것도 그 일환으로서 지방에서 이를 직접 담당하는 분들의 중앙과의 의사소통 또는 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農業振興公社의 崔部長님께서 農工地區 조성과 관련하여 農業振興公社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崔用翔(農振公 農業部長) : 이제까지 얘기의 흐름은 農家所得 증대를 도모함에 있어서, 이미 農業所得 증대의 측면은 거의 벽에 부딪쳤고, 따라서 자연히 農외소득 증대로 방향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農村工業化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崔詳夫박사께서는 폭넓고 깊이 있는 對策까지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그냥 공장만 유치한다 해서 지방의 經濟發展과 地域開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생각이 듈다.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農業生產力 발전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도 겸한 농촌의 綜合整備開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農業圈의 보존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실 현재 農業圈이 얼마나큼 잠식되고, 그 유지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또 한 가지는 工場誘致와 관련하여 水資源 개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정된 水資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공단의 규모가 작든 크든,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타용수 등의 물問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어 농업부문과의 연결, 水資源의 利用開發問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른投資가 이루어져야 겠다는 생각이다.

司會：農業圈保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련한 事例研究 자료가 崔洋夫박사의 發表論文 74 페이지에 나와 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물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길 바란다는 지적을 잘해주셨다. 이번에는 農協中央會 徐元鎬次長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徐元鎬（農協中央會 調查部 次長）：저는 農協의 입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다음으로 農協中央會 徐元鎬次長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9개의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치·지원이 확정되었으나, 여기에는 모두 民間資本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農協이 앞으로 농산물 가공업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본다. 교파서적인 얘기지만 농가 입장에서 농산물 가공업의 필요성이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즉, 원료농산물의 유리한 판매,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안정화, 고용기회 증대와 농외소득 증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간파하는 것이 附加價值의 대농민 환원이라는 점이다. 저는 附加價值의 대농민 환원이 이 시점에서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예를 한 가지 들겠다.

금년초에 國際會議 관계로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포도 가공공장에 간 일이 있는데, 공장은 소규모지만 協同組合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다. 그 포도

가공공장은 農協의 관내에서 원료를 조달함으로써 농민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생산, 판매, 가공의 일관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농민들은 市場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공장에 판매하고, 농민조합원들이 그 공장에 고용되어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또 附加價值의 대농민, 대농촌 환원과 관련되겠지만, 그 協同組合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조합원에게 전부 환원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일반 가공업체에 대해 경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고 진정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農協이 가공업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美國의 경우에도 「썬키스트」, 「렌드레이크」, 「라이스랜드」 등을 協同組合이 운영하는 가공공장에서 만들므로써 농민의 所得向上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農村開發을 담당하는 金融機關으로서 農協의役割이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農村工業 발전을 위해서는 農協의 金融支援 기능을 강화해서 農村工業化를 위한 金融機關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農業資金마저 부족해서 農協 자체자금으로는 농업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이 어렵지만 政策金融 부분에 대해서라도 農協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일본은 日本開發銀行과 中小企業金融金庫 외에 農協, 農林中央金庫에서도 농촌지역 공장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司會：農協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 다음으로 畜協 李部長님께서 한 말씀해 주겠다.

李信坤（畜協 調査部長）：지금까지 토의과정에서 나온 地方政府의 公통적인 문제는 財政問題인 것 같다. 農工地區를 조성하는데 지방재정으로는 어렵다는 점인데, 劉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금문제는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지, 운영이 잘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본다. 그렇다면 劉박사님 말씀대로 農工地區를 중앙의 의도대로 할 것이냐, 지방의 의도대로 할 것이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 이事業을 하나의示範事業으로서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좀더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所得增大란 결국雇傭增大에서 오는데, 이는 생산된 제품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문제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 고용문제만 강조한다면 지난 새마을工場育成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좀더 거시적으로 보면, 200만 농가의 호당 100만 원의所得增大를 위해서는年間 전국에서 약 2조원의附加價值가 농가에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때 농촌에 귀속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25%로 보게 된다면總算出은 8조원, 약 1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이 없을 때 당장의 제품생산은 우선 팔리는 것에만 집중되고, 그 결과價格混亂을 야기시켜 경영압박, 가동률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資金의 악순환, 政府財政投資에 따른 정부재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농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와 이들에 대한總需要豫測 등을 해야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崔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綜合開發事業을 할 때는관련부서가 많게 마련인데 우리나라行政처럼 경직화된 곳에서는 한 기관에서 주관을 해야지 이것이 분산되면, 과거 1973-74년도의大單位農業綜合開發事業처럼 막대한 투자에 의해 효과를 못 거두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리고地方政府에서도 이 사업추진 창구를一元化해야지 그렇지 않고商工課, 農政課 등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崔洋夫박사께서도 말씀했듯이 가칭「農村工業振興公團」이라든가, 「農村工業化協同組合」이라든가 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으로 생각된다.

司會: 지금 계수적으로 보아 농가호당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2조원의 부가가치가 농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는 또 8조원의 물건을 팔아야 한다니, 벌써부터 겁이 나고 질릴 것 같습니다만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水協中央會李次長께서 말씀해 주겠다.

李敏秀(水協中央會 調査部次長) : 農工地區 政策과 관련하여 水協의 입장에 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어촌과 관련한 지역선정 문제는 어민의 漁業所得 의존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어촌에 공장을 신설한다할 때 어업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生產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水協이 198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업종류 중에서 기선을 통한 공동어업이나 申告業관계, 주로 천혜간사지를 이용한 체포업 분야에서 어업소득 의존도가 약 5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어가소득 중에서 어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漁業生產性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 구성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 구성은 시행령상에서 농민이나 어민 중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자를 주무관청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總漁家의 82%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수협이 여기에 제외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 委員會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도록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生產漁民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司會 : 저도 수협이 위원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데 동감이다. 다음에 새마을 본부 李課長님께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李炳浩(새마을運動中央本部 企劃課長) :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福祉農村의 건설이고,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주제가 農村建設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市·道나 정부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저희 새마을 일선조직과 중앙조직을 최대한 참여시켜달라는 것이다. 저희는 지금 市, 郡, 區 단위로 지역단위 특색사업을 이미 전개하고 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이나 새마을 광역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책적인 사업과도 반드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농촌인구의 확보내지 정착을 위한 시책도 아울러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저희 새마을본부에서는 農村人口확보를 위한 優秀農高生 교육, 農漁民後繼者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차산업의 발전은 1차산업과의 연관하에서 가능하며, 이때에 중요한 것은 人力確保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崔박사님도 먼저 지적하였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기구의 설립과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현재 政府 각 부처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農外所得 사업의 통폐합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로 새마을공장이 얘기되고 있어 새마을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잘못된 사실이기는 하나 앞으로 政策推進은 이 새마을 공장을 최대한 活性化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農工地區의 衛星地區化를 해서라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司會：마지막으로 農振公의 韓課長님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韓相昱(農振公 調查部長)：저는 회의자료를 보고 느낀 것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農工地區의 조성규모에 대해 어떤 것은 1만평, 어떤 것은 10만평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數值들은 무려 10배의 편차를 갖고 있다. 보다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 설득력 있는 규모를 제시하였으면 한다. 최소한 地域特性에 따른 모델을 몇 개라도 개발하여 모델에 의한 면적이나,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생활환경, 농촌구조개선 등과 병행한 農工地區 조성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綜合計劃이 되어 효과적인 農村所得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기반조성 사업은 저희 농진공이 참여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司會：農工地區의 규모에 관한 얘기는 1만평, 國土開發研究院 劉박사님의 3만평, 崔박사님의 10만평, 그리고 과거 새마을공장과 같은 생각 4 가지 유형이 나왔다. 이것은 앞으로 委員會에서 다시 토의가 되고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배경에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각 지방관계관 여러분과 농업 및 농어촌 소득과 관련된 기관에서 말씀해 주셨다. 本構想이 중앙에서 출발하여 지방의 애로사항과 추진과정의 문제를 들었으므로 다시 중앙에서의 의견을 재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중앙행정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먼저 農水產部 孫課長님 말씀해 주십시오.

孫讚俊 (農水產部 農村所得課長) : 저희들이 農外所得 사업을 펴면서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앞뒤가 뒤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農水產部 입장에서 보면 農外所得을 높여야 되겠다는 절실한 當爲性에 쫓기면서, 현재 우리 농촌 실정에서 볼 때 그 가능성에 있느냐는 여건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商工部가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은 產業政策으로서 農村工業政策은 우선 순위가 늦기 때문에 저희와는 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經濟企劃院이 이 사업의 推進過程에서 거중조정 역할을 잘해주었으면 한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 崔박사님 말씀처럼 地方經濟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자체의 종합적인 추진이란 측면에서의 접근하였으면 한다. 따라서 企劃院에서는 당장의 投資配分을 農業開發豫算에서 農村開發豫算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農村經濟의 진흥으로 都農間의 均衡發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등이 고려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農工地區의 指定 및 造成은 과거 새마을공장이 거의가 공장단위로 접근하여 社會下部構造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인식하에서 앞으로는 공간적 차원에서地域開發에 접근하자는 얘기인데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공장이 합쳐짐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施行側인 道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조금전 人力問題를 거론하셨습니다만 - 人力確保問題와 財政能力, 특히 지방비부담능력 및 立地選定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다.

司會 : 이제 농수산 예산담당과 관련하여 企劃院 趙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趙學國 (企劃院 農水產豫算擔當官) : 사실 저는 듣는 입장에서 참석을 했고, 또

사전에 이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양해를 구했었읍니다만, 얘기 를 듣다 보니 너무나 흥미가 있고, 도움되는 점이 많아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회의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계획추진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반면 行政支援 문제라든가 그밖에 오늘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오히려 기본적인 문제에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農工地區와 기존 工團과의 관계, 입지선정 문제, 업종선택, 공단규모, 시행지구수, 財源分配 문제 등의 기본문제에 대해서 어떤 슴一點을 못찾고 있는 것 같다. 가령 입지선정은 농촌중심도시에 가까이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의 생산활동공간에 위치시킬 것인가라든가, 대상업체 선정은 농업과 관련이 많은 포장자재, 농산물 가공공장, 간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품업체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로 대상범위를 넓힐 것인지 등의 문제도 그렇고 규모문제만 해도 1만평이다, 10만평이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國庫支援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등의 예산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崔박사께서도 지적하셨지만, 農工地區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는 것 같다. 이 農工地區가 農村經濟내지는 농촌과 도시문제, 그리고 地域經濟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볼 것 이냐, 아니면 한정되어 있는 농촌의 所得源을 농업외에서 어떻게 찾아 볼 수 없을 것인가 하는데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저희 기획원에서 생각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추진 중인 定住圈開發計劃 같은 차원으로 農工地區 사업을 연결시켜 좀더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는 異見이 없다. 농공지구 사업의 추진은 농촌경제에 있어서 농업소득의 증대가 점차 어려워지고 한계가 왔다는 전환기적 인식에서 비롯되며, 農家所得을 높리면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對象業體라든가 규모 등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업체는 農業生產 활동과 가까운 업종 즉, 포장자재, 가공업 종, 농기계부품 등 낮은 기술의 농민이 유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규모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1만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시행주체 문제는 자칫 재원이 분산되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농촌지역의 경제와 가장 밀

접한 관계를 가진 農水產部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것들이 저희企劃院 입장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차이가 좁혀져 빨리
合一點을 찾아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항상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사정이 더 어렵다, 지방정부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더 어렵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事業效率性보다는 地方財政形便이 나은 곳에 먼저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農工地區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여 支援方法과 補助率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司會： 좋은 말씀이었다. 이러한 모임이 너무 늦었다는데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한다.

豫算支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道에서는 地方費가, 郡에서는 郡費가 문제되어서 좋은 입지적 여건은 갖추어져 있더라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이 많을 것이다.

주무부처의 문제는 經濟企劃院이 통제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문제는 각 소관 부처별로, 즉 建設部 관련사업은 건설부 예산에서, 동력관계는 동자부 예산에서 전화·통신관계는 체신부에서 맡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農家所得이란 측면에서 또 농촌경제와의 관련성 때문에 농수산부가 앞에 나서게 된 것 이지만, 사실 공단조성은 工業 쪽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의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농업에 관한 농수산부이지만, 농촌에 관한 한은 전체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하신 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우선 金漢坤 국장님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漢坤 (農水產部 農政局長) : 이제까지의 여러 의견들을 가능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資金運用 방식에 있어서, 앞서 바나나資金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원래부터 中小企業振興公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農水產部의 農安基金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나 판매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상

振興公團에 넣은 것 뿐이다.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부업단지 관광농업이나 기타 농외소득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자금 또는 경영기술상의 모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공업정책적인 성격때문에 진흥공단에 넣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일 뿐 그 주관은 농수산부이고, 또 그것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農水產部의 생각이다.

그리고 農外所得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업 차원이므로 商工政策이어야 한다기보다는, 농촌 또 농가의 소득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은 원래 농수산부가 주관을 해서 시작을 했으나, 농수산부의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원이 전체 경제문제를 調整한다는 의미에서 企劃院 주관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法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企劃院의 기능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계획수립이나 종합적인 운영은 企劃院이 사령탑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단체에서는 실무적인 세부사항까지 다 할 수는 없다. 이 단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느 部處가 담당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산발적이 되어서는 새마을공장과 같은 또 하나의 분산정책으로 끝날 것이다. 즉 工團造成은 건설부가, 資金支援은 진흥공단, 技術支援은 어디서, 또 전기는 어느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근본적으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의 法精神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法精神을 파악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는데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앞서 논의되었던 공단규모 문제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이었다고 본다. 즉 공단규모를 1만평이다, 3만평, 10만평이다 하였는데, 농촌지역에 10만평 단위의 공단조성을 과연 農工地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농공지구가 아니라 輸出工業團地내지는 새로운 工業團地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얘기나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재와 같은 농촌지역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농수산부와 연결되어 생각하고 그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는 農水產部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工團造成이 잘 안되거나 입주공장이 없고 또 공장운영이 잘 안될 때 그것을 건설부, 상공부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농촌문제에 대한 地域開發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수산부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계열 기업의 입주를 말씀했는데, 현재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공지구의 규모문제는 적어도 3만평 이상으로 한다면 農工地區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농촌지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촌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텅텅 비어 있는 반월공단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공단을 활용하지 새로 조성은 왜 하는가?

또 한 가지 工團造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經濟四團體長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민간인이 공단조성을 원할 때는 이를 허가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즉 하천, 구릉지, 야산 등을 개발해서 기존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工團造成이 가능할 때 이를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도 산림, 끝재채취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됩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문제로는 일차적으로 농수산물 가공공장 같은 농업관련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다음 여유가 있을 때 대기업의 계열기업의 입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司會：그 다음으로 경제기획원 崔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

崔鍾璣(經濟企劃院 產業課長)：오늘 상당부분의 論難 또는 오해는 저희 經濟企劃院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했더라면 안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농외소득 증대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자와 얘기를 통해서 잡은 대충의 줄거리는 3개로 볼 수 있다. 첫째는 農村工業化를 통한 농외 소득 증대이고, 둘째가 기존에 農水產部에서 하고 있는 農村副業團地도 공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지만,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줄기로 보아 이를 계속 육성하자는 것이고, 세째는 새로운 所得源으로서 農漁村休養地를 개발해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농수산물 加工工場은 크게 보아 농어촌 공업도입 촉진에 일단 포함이 되고, 앞서 농수산부에서 말씀드

린 觀光農業은 큰 제목으로 농어촌 휴양지 개발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 副業團地 개발과 관광농업 개발 - 휴양지 개발은 경우에 따라서 교통부, 내무부와 관련이 되지만 - 은 사실상 농수산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고 현재도 이미 상당부분 깊이 관여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야는 명백히 농수산부가 맡아서 하게 된다.

다음에 農村工業 도입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공업도입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農工地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이 농공지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공업단지이다 보니, 그 造成에서부터 入住業體 선정, 金融稅制 지원, 또 무슨 관로 확보 등의 業務까지 각 부처와 관련성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정부의 기본전략이 輸出育成에 있고 여기에는 각 부처의 업무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출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각 부처가 관련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간 이야기가 다르고 서로 협조가 안되는데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委員會」를 만들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부처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바로 제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처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農工地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각 부처간의 의견차이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느냐 등등의 문제를 바로 뒤에서 체크해서 부처간의 협조를 구하고 조정하는 것은, 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간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드리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앙부처간에 별도의 특별한 기구가 없어 상당히 난맥상을 보인 것 같은 것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農外所得 개발시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은 전적으로 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이 책임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업단지와 관광농업, 즉 농어촌 휴양지개발에 대해서는 농수산부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또 각 부처간에 협조 할 일이 있으나 이것이 원만히 안될 때는 위원회로 올려서 저희들이 간사 기능을 하여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農工地區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농수산부에서 既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는데, 농어촌 지역의 제조업체 중에서도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中小企業振興公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農開公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성 검토는 農開公에서 하며, 그 지원은 농수산부에서 기히 확보하고 있는 農業開發資金을 통해서 나가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농공지구의 규모라든가 업종문제는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대충 합일점을 이룬 것이 만평 내외였으며 업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지난해 KDI에서 그동안 農外所得增大施策에 관한 용역사업을 하면서 專門家들의 조언을 얻고 우리 나라 農業立地를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다. 사실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集積의 利益이 있다. 기술지도, 여러 가지 公害防止施設을 한다든지 그 좋은 점은 알지만, 사실상 현재 人力不足으로 농번기에 사람이 모자란다는 상황에서 만평도 크다는 사람이 많은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만평 규모로도 공장이 몇 개나 들어가겠느냐는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그 점은 현재 저희들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갖고 萬坪 내외로 정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業種의 문제는,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이 되기 때문에 農漁民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농어민이 생산한 원료를 사서 쓰는 農水產物 加工工場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고집할 수야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라고 하지만, 새마을공장을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농어촌에 있는 지방유지들이 정부가 어떤 政策事業을 한다하니 이번 기회에 나도 제조업체 하나 가지고 사장노릇 좀 해보겠다 하는 식의 생각으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인수 또는 세워서 뭐해보겠다 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그래서 우선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나 그 지방 特化產業에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을 두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새마을공장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事業計劃書를 들고 왔는데, “당신 이것 어떻게 팔겠소?” 하면 “아 그것 판로야 정부에서 마련해 줄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다. 농수산물 가공을 한다는 새마을공장의 경우 상당수가 그렇게 해서 망했다. 장사란 아주 냉혹한 사회인데, 이런 식의 아마추어 기업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많이 만들어 地域住民들 소득에도 기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망하고 나면 결국 거기에 입시로라도 고용되었던 사람, 그 주변에 그것을 믿고 투자를 했거나 또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저는 農漁村地域에 건설한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꼭 어떤 업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설사 대기업의 系列工場이라 하더라도 그 지방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농수산물 가공공장이半年도 못가 망해버리는 경우보다는 그 地域發展에 훨씬 나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굳이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된다는 뜻을 박지 말자는 것이며, 공장이 농촌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農產物하고 연관지어 그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農村에 위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精密產業으로 輸出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폭넓게 생각할 때 어떤 울타리를 미리 쳐가지고 農村工業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위 네가티브 리스트 즉, 公害業種이 아닌 다음에야 일단은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地方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동안 地方과 이런 대화가 없어 이 農工地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낀다. 저희 계획으로는 이번에 농공지구가 선정되면, 우선 그 지역 해당 郡職員들이라든가, 道에서 관련되는 분들은 서울에서 이런 式의 모임 또는 教育을 갖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기회에 그 지방의 공업도입촉진을 위해서는 地方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中央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委員會 구성에 水協이 왜 빠졌느냐는 얘긴데, 사실 저희 課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農業만 얘기하게 되고, 水產業과 林業은 마치 蟒足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委員會構成을 보면 水產關係가 전혀 빠진 것은 아니다. 水產廳長이 委員으로 들어가 있고, 水產廳의 담당국 장께서 實務委員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水協까지는 미쳐 넣지 못하였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수산청만 가지고는 水協 또는 漁民의 의사가 대변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면 水協도 참여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司會：다음으로 崔洋夫 박사께서 말씀해 주겠다.

崔洋夫（農經研 首席研究員）：회의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상당한 열기를 띠고 있다. 제가 오늘 論文發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했는데, 이미 崔課長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몇 가지細部분야에서 약간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趙學國 課長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지만, 農工地區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 性格을 地方의 工業開發이라 는 국가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는 전혀 다른 각각이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農工地區의 성격을 서울, 首都圈과 地方이라는 하나의 큰 國家政策, 經濟開發政策, 工業開發政策의 脈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을 단순하게 농가의 農外所得이라는 개념에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接近方式으로 농가의 農外所得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政策은 그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 나라 농가의 農외소득율은 30% 정도라 하지만, 실제 勞賃就業所得으로 보면 10% 수준밖에 안된다. 그런데 여기다 만평 정도의 공단에다 공장 몇 개 집어 넣어서 앞으로 20%가 된다, 30%가 된다 하는 것이 10년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직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한 政策發想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热氣를 갖고 논의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農외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推算을 해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공단 규모를 10만평이다, 3만평이다, 1만평이다 이렇게 뜻을 박는 것 자체가 우선 잘 못된 개념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논문에서도 공단규모를 5만평, 10만평, 20만평으로 했을 때 어떤 수준의 규모인가를推定하고 이것을 평균해서 10만평 수준으로 했을 때 어떤 한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저희들이 農村地域 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면서도 康津定住生活圈開發計劃을 세울 때는 약 8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산을 했고, 安城에서는 약 20만평이, 固城에 대해서는 약 3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地域與件과 事情에 따라서 工團의 규모는 3만평이 될 수도 있고 8만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官僚行政이 문제가 되어 예를 들어 經濟企劃院에서 指針으로 1만평 규모로 계획을 세우라고 내려가면, 各道에서는 그 1만평 규모에다 모두 맞추는 硬直性을 보여 준다. 이번에 계획서를 올려 온 것들도 전부 다 12,000 평, 10,200 평 해서 그 1만평 규모에다 맞추기에 급급한 계획서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이며 道計劃 자체가 이런 식이 되어서 안되겠다는 얘기다. 우리가 아는 지역에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道計劃을 세웠고, 農工地區를 몇 군데 조성하기로 했다면, 이번에 어디 어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3만평 규모가 필요하고, 이것은 5만평, 이것은 1만평이면 충분하다. 이런 判斷과 그 當爲性을 각道가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萬坪이다 하는 식의 얘기는 農工地區概念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 다음에 各部處間의 農工地區造成 業務擔當에 있어서 그 주관은 어느 부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다든가 하는 논의는 오늘 협의회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어느 부처가 主導權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해나가자 이런 論議를 하자는 會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금 中央政府의 모든 부처와 地方政府 모두가 합심해서, 현재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產業政策과 地方經濟의 相對的沈滯問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자리이지, 어느 部處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저것은 남이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의를 하자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논의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국 이 사업에 관한 經濟企劃院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가 생각하는 農工地區의 概念은 지금 혼히들 생각하시는 崙面單位 農村地域에 農產物加工工場, 農業生產資材 등을 생산하는 몇 개 공장을 넣는 소규모의 傳統的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발표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더욱 擴張된 새로운 개념으로서 농촌공업을 본다면, 이 工團의 造成問題는 분명히 농수산부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건설부의 地方工團政策, 地方工業開發政策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짐으로써 所期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었던 사항이다.

오늘 本政策協議會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상의 문제들은, 工團造成事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의견제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면서 보다 綜合的인 政策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1984년도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部處, 經濟企劃院 자신도 이에 대해서 뚜렷한 자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시작한다는 데 대해서는 異義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示範事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사업의 基本性格, 基本政策의 方向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논문은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제 자신이 農村工業開發과 관련하여 7년 가까이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정부정책에 混亂을 일으키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農村工業開發이 活性化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論文을 構成하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러한 論議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司會：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예정시간 보다 약간 초과는 됐읍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論議들을 두서 없이 나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計劃推進以前에 實務陣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만들겠다는 최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工場誘致와 함께 技能工의 育成을 위한 교육 즉 人力開發問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立地選定은 그 地域實情에 맞도록 自由立地로 하되 농지 잠식은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짐 약되었다.

세째, 誘致業種은 農產物加工과 같은 農業關聯業種이 우선함은 당연하지만, 이 외에도 公害業種이 아닌 이상 모두 유치 가능하도록 개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문제는 農村地域에 들어올 공장의 업종선택을 생각하기에 앞서 과연 들어오려는企業人이 있겠는가 우려하였으나, 中小企業協同組合의 意見으로는 적절한 稅制支援만 뒤따라도 현재 都市에 있는 공장 중 상당수가 농촌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매우 회망적인 얘기를 하셨다. 특히 도시와 지방과의 地價差異에서 오는 法人の 特別利

盈(양도차액)에 重課稅할 것이 아니라, 移轉 전후의 面積比較에 근거한 課稅制로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등은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네째, 地方에서 공장운영은 여러가지 制約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資金問題라고 본다. 現地에서 資金融通이 어려워 서울까지 와서 융자해가려고 애쓰는 기업인이 부지기수다. 이 資金問題는 현행 擔保融資制에도 상당한 원인 이 있으므로 農工地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信用保證基金制度 같은 것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다.

다섯째, 既往에 조성은 되어 있으나 入住業體가 없어 不實化되고 있는 기존공 단과 농공지구와의 관계문제는, 기존공단을 농공지구안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놔두고 새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農工地區의 規模問題는 1萬坪, 3萬坪, 10萬坪 등 여러 의견이 나왔 으나, 10萬坪을 말씀하신 분이 반드시 어떤 절대적 數值에 구애받지 말고 그 地域의 實情과 興件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補充說明을 해주셨다.

일곱째, 地方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강조하는 地方費問題이다. 어떤 事業推進에 있어서 劃一的인 地方費負擔率를 定했을 경우, 설령 自然的인 立地條件이나 도로, 교통, 통신 등 다 좋더라도 지방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中央政府의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여덟번째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主管 部處問題인데 金漢坤 局長님은 농수산부 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일부에서는 企劃院이 중심이 되어 調整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事業의 性格上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經濟企劃院에서 잘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會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農家所得 증대를 위한 農外所得 증대사업의 추진이라 해서 農業所得 증대의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農業하는 사람들의 판에 박힌 소리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國民經濟 형편상 농산물 가격을 올려줄 수 없는 처지라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基盤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미국 농민 한 사람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일곱 사람이 달려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機械化, 耕地基盤 조성, 排水施設 등의 生產基盤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労

動生產性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채소나 과일의 경우 지금이라도 밭의 경지정리나 수리문제만 해결된다면 같은 면적에서 현재의 배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안되어 있으니 植付面積만 잔뜩 확보해 놓고 雨順風調 여하에 따라 豊凶과 價格變動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安全裝置가 거의 없는 우리 農業現實에서 볼 때 農業所得 증대의 측면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다.

附錄 1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法律 條 3689 號 (1983.12)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은 農漁村地域에 工業 및 서비스 產業을 誘致하여 農漁村所得源의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農漁村所得을 增大하고 農漁村所得構造를 高度化하여 農漁村經濟의 균형 있는 發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이 法에서 “ 農漁村地域 ”이라 함은 郡의 地域 중 農業 · 林業 또는 水產業을 主產業으로 하는 地域을 말한다. 다만, 市의 地域의 경우에도 隣近 行政區域과의 關係 기타 經濟與件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漁村地域으로 할 수 있다.

第 2 章 農漁村所得源開發計劃의 樹立

第 2 條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方針) ① 農漁村所得源開發과 관계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別 農漁村所得源開發方針을 作成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經濟企劃院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제출한 所管別 農漁村所得源開發方針을 綜合 · 調整하여 農漁村所得增大 施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方針 (이하 “ 基本方針 ”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公告한다.

③ 第 2 項의 基本方針에는 다음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農漁村所得源開發의 基本目標
2.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의 選定基準 및 支援方法

3. 農漁村地域工業開發促進地區 (이하 “農工地區”라 한다.) 의 指定 및 農工地區與件의 造成에 관한 事項
4. 農漁村地域의 勞動力需給에 관한 事項
5. 農漁村地域의 環境保全에 관한 事項
6. 其他 農漁村所得源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第4條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計劃) ①道知事는 農漁村地域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基本方針에 따라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計劃 (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 을樹立하여 이를 公告한다.

②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管轄區域안의 農漁村所得源開發의 基本目標
 2.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의 選定方法
 3. 農工地區의 指定 및 入住業種의 選定方法
 4. 農漁村地域에의 工業誘致를 위한 工場用地와 農地의 利用調整에 관한 方針
 5. 工場立地 · 道路 및 工業用水供給施設등 農工地區의 生產基盤整備에 관한 事項
 6. 農漁村地域의 職業訓練 및 就業의 促進에 관한 事項
 7. 工業誘致에 따른 環境保全에 관한 事項
 8. 其他 農漁村所得源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③道知事が 第1項의 基本計劃을樹立한 때에는 이를 公告함에 앞서 經濟企劃院長官과 所管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經濟企劃院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道知事에게 당해 基本計劃의 調整을 要求할 수 있다.
- ④道知事는 地形 · 用水 · 輸送條件등 自然的 · 經濟的 與件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隣接道와 共同으로 基本計劃을樹立할 수 있으며, 必要한 경우에는 이에 關하여 經濟企劃院長官에게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第5條 (農漁村所得源開發施行計劃) ①市長 · 郡守는 農漁村地域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基本計劃에 따라 農漁村所得源開發施行計劃 (이하 “施

行計劃”이라 한다)을樹立하여 이를公告한다.

②第1項의 施行計劃에는 다음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管轄區域안에 農漁村所得增大의 基本目標
2.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의 選定 및 事業實施計劃에 關한 事項
3. 農工地區의 指定 및 入住工業의 種類와 規模에 關한 事項
4. 工業誘致를 위한 工場用地와 農地와 利用調整에 關한 事項
5. 工場立地·道路 및 工業用水供給施設등 農工地區의 生產基盤整備에 關한 事項
6. 標準賃貸工場의 建設 및 그 賃貸計劃에 關한 事項
7. 原料調達 및 製品의 生產과 販賣計劃에 關한 事項
8. 就業人力調整 및 就業促進에 關한 事項
9. 工業誘致에 따른 環境保全에 關한 事項
10. 其他 農漁村所得源開發을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③市長·郡守가 第1項의 施行計劃을樹立한 때에는 이를 公告함에 앞서 道知事에게 報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하며, 道知事는 具體的인 内容을 檢討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修正·補完을 命할 수 있다.

④市場·郡守는 地形·用水·輸送條件등 自然的·經濟的 與件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隣接 市·郡과 共同으로 施行計劃을樹立할 수 있으며, 必要한 경우에는 이에 關하여 道知事에게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第6條(農漁村所得源開發計劃의樹立을 위한協調) 道知事는 基本計劃을樹立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關係 研究機關學術團體 其他 關聯 機關에 協調를 要請할 수 있다.

第7條(다른計劃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한 農漁村所得源開發計劃은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한 國土建設綜合計劃,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國土利用計劃,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 및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計劃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第3章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의 施行

第8條 (農工地區의 指定) ①市場·郡守는 農漁村地域에의 工業의 誘致와 育成을 위하여 施行計劃에 따라 第24條에 의한 中央農漁村所得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農工地區를 指定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工地區를 指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地形·用水·輸送條件等 自然的·經濟的 與件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隣近 市·郡과 共同으로 農工地區를 指定할 수 있으며, 必要한 경우에는 이에 關하여 道知事에게 調整을 要請할 수 있다.

第9條 (農工地區안의 財產處分) 農工地區안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는 國有財產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블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賣却 또는 貸付할 수 있다.

第10條 (事業計劃의 承認)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農工地區에 入住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市長·郡守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市長·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事業計劃의 妥當性을 檢討한 후 承認與否를 決定하되,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 그 事業計劃에 第4項各號중 해당 事項이 있는 때에는 미리 所管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은 그 承認을 얻은 者가 2年 이내에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效力を 잃는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事業計劃의 承認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중 해당 事項의 認定·申告·許可·認可·免許·同意 또는 解除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2. 工業配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置申告
3.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

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4. 都市計劃法 第 24 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實施計劃의 認可
5. 公有水面管理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占用 및 使用의 認可
6. 公有水面埋立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7. 河川法 第 23 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8. 山林法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및 同法 第 90 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와 申告
9. 私道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10. 水道法 第 13 條 및 第 32 條 및 第 32 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11. 消防法 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新築등에 대한 許可。 확인의 同意

第 11 條 (公共施設의 優先設置) 道路·上水道·電氣등 公共施設을 主管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은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그 施設을 優先的으로 設置하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第 12 條 (標準賃貸工場의 建設) ①市長·郡守는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農工地區안에 標準賃貸工場을 建設하여 이를 賃貸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標準賃貸工場을 建設하는 때에는 第 10 條 第 4 項 各號중 해당 事項의 認定·申告·許可·認可·免許同意 또는 解除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 13 條 (生產製品의 販賣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工地區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生產하는 製品의 販路擴張을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과의 隨意契約을 擴大하고 輸出支援 및 系列化 促進등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 14 條 (技術 및 經營指導) 中小企業振興公團은 市長·郡守 및 農工地區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技

術 및 經營指導를 하여야 한다.

第15條 (農漁村職業訓練의 強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에 必要한 技能人力의 원활한 需給을 위하여 農漁村職業訓練을 強化하고 雇傭情報의 제공, 就業指導 및 就業斡旋을 하여야 하며, 農工地區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한 從業員訓練을 支援하는 등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6條 (農漁村環境의 保全)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漁村地域에 의 工業誘致로 인하여 農漁村의 自然環境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環境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農工地區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 環境污染物質등의 防止施設의 設置등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第17條 (副業團地의 指定) 市長·郡守는 農漁村地域안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を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施行計劃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漁村副業團地 (이하 “副業團地”라 한다)를 指定할 수 있다.

第18條 (農水產物加工工場의 指定) ①市長·郡守는 農漁村地域에의 農水產物의 產地加工施設을 誘致·育成하기 위하여 施行計劃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水產物加工工場 (이하 “加工工場”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工工場의 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市長·郡守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事業計劃의 妥當性을 檢討한 후 指定與否를 決定하되, 指定하고자 하는 경우 그 事業計劃에 第10條 第4項 第2號 내지 第11號중 해당事項이 있는 때에는 所管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市長·郡守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工工場을 指定한 때에는 第10條 第4項 第2號 내지 第11號중 해당 事項의 申告·許可·認可·免許·同意 또는 解除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19條 (標準賃貸加工工場의 建設) ①市長·郡守는 農漁村地域안에 加

工工場을 誘致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標準賃貸加工工場을 建設하여 이를 賃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標準賃貸加工工場을 建設한 때에는 第10條 第4項 第2號 내지 第11號중 해당 事項의 申告·許可·免許·同意 또는 解除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20條(技術 및 經營指導) 農漁村開發公社는 市長·郡守 또는 加工工場의 長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技術 및 經營指導를 하여야 한다.

第21條(農漁村休養地의 指定) 市長·郡守는 農漁村地域안의 自然景觀을 保全하며 農漁村所得增大에 寄與하기 위하여 施行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漁村休養地를 指定하여 이를 開發하거나 그 地域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開發하게 할 수 있다.

第22條(租稅의 減免措置)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1. 農工地區 또는 副業園地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
2. 加工工場을 建設·運營하는 者

第23條(資金의 원활한 供給을 위한 措置)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2條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資金의 원활한 供給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4章 捕 則

第24條(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農漁村所得源 開發에 관한 中요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에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를, 道에 道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를, 市·郡에 市·郡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를 둔다.

②委員會의 構成과 機能 其他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道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와 市·郡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 25 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農漁村所得源開發計劃과 關聯하여 이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國土利用管理法 · 都市計劃法 · 工業配置法 및 中小企業振興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26 條 (報告) 道知事은 每年 農漁村所得源開發計劃의 推進實績을 綜合 · 作成하여 다음해 3 月 31 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과 所管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27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새마을工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商工部長官이 指定한 새마을工場은 第 13 條 내지 第 16 條 第 22 條 및 第 23 條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農工地區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는 者로 본다.

③ (農漁村副業團地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農水產部長官이 指定한 農漁村副業團地 및 農水產物加工工場은 第 17 條 및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것으로 본다.

附錄 2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施行令

大統領令 第 11423 號 (1984.5)

第 1 條 (目的) 이 令은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以下 “法”이라 한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農漁村地域의 定義) 法 第 2 條에서 “農漁村地域”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다음의 市의 地域을 말한다.

1. 江原道 束草市
2. 忠清北道 堤川市
3. 全羅北道 定州市 · 南原市
4. 全羅南道 錦城市
5. 慶尚北道 金泉市 · 榮州市
6. 慶尚南道 忠武市 · 三千浦市
7. 其他 經濟企劃院長官이 農漁村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 (以下 “中央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農漁村地域으로 告示한 市

第 3 條 (所管別 農漁村所得源開發方針의 作成機關) 法 第 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管別로 農漁村所得源開發方針 (以下 “開發方針”이라 한다)을 作成하여야 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內務部長官 · 財務部長官 · 農水產部長官 · 商工部長官 · 建設部長官 · 勞動部長官 · 交通部長官 · 山林廳長 · 水產廳長 및 環境廳長으로 한다.

第 4 條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方針의 樹立節次等) ① 第 2 條의 規定에 의한 市의 長 (以下 “市長”이라 한다)과 郡守는 다음해에 推進하고자 하는 當該 地域의 農漁村所得源開發施策案과 關聯資料를 作成하여 市 · 郡 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 (以下 “市 · 郡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每年 10 月末日까지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豊算과 關聯되는 施策인 境遇에는 3 月末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②道知事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施策案을 綜合·調整하여 다음해에 推進하고자 하는 當該 道地域의 農漁村所得源開發施策案과 關聯資料를 作成하여 道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以下 “道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每年 11 月末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과 所管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豊算과 關聯되는 施策인 경우에는 4 月末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③第 3 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施策案을 綜合·調整하여 다음 各號의 該當 所管事項이 包含된 所管別 開發方針을 作成하여 12 月末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豊算과 關聯되는 事項의 境遇에는 다음해의 豊算要求에 反映하여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1. 法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副業團地의 育成에 관한 事項
 2. 法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產物加工工場의 指定과 擴充에 관한 事項
 3. 法 第 21 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地域의 休養地開發과 觀光農業에 관한 事項
 4. 과실주의 開發·普及에 관한 事項
 5. 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地域工業開發促進地區(以下 “農工地區”라 한다)의 指定 및 그 與件의 造成과 管理에 관한 事項
 6. 農漁村地域 製造業體에 대한 技術·經營指導에 관한 事項
 7. 農漁村地域 製造業體에 대한 金融支援에 관한 事項
 8. 農漁村地域의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에 관한 事項
 9. 農漁村地域의 社會間接資本(道路·工業用水 供給施設 等)의 擴充에 관한 事項
 10. 法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地域의 環境保全에 관한 事項
 11. 其他 農漁村所得增大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 ④第 3 項의 所管別 開發方針에는 計劃年度에 推進할 施策과 함께 長期

政策方向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經濟企劃院長官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開發方針을 綜合·調整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方針(以下“基本方針”이라 한다)을樹立하고 中央委員會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計劃年度의 1月末日까지 公告한다.

第 5 條(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計劃) ①法 第 4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道知事의 經濟企劃院長官 및 所管 中央行政機關의 長에 대한 農漁村所得源開發基本計劃(以下“基本計劃”이라 한다)의 樹立·報告는 經濟企劃院長官이 基本方針을 樹立·公告한 날로부터 15日以內에 하되, 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②經濟企劃院長官은 道知事が 提出한 基本計劃을 檢討하여 그 結果를 15日以內에 當該 道知事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③道知事은 經濟企劃院長官으로부터 基本計劃의 檢討結果를 通告받은 때에는 이를 調整·補完하여 7日以內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經濟企劃院長官이 道知事로부터 法 第 4 條第 4 項의 共同基本計劃에 대한 調整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調整하여 그 結果를 20日以內에 道知事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다만, 經濟企劃院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20日의 範圍안에서 1回에 限하여 通告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⑤法 第 4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으로 樹立한 基本計劃의 公告는 當道知事が 共同으로 한다.

第 6 條(農漁村所得源開發施行計劃) ①法 第 5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道知事에 대한 農漁村所得源開發施行計劃(以下“施行計劃”이라 한다)의 樹立·報告는 道知事が 基本計劃을 公告한 날로부터 15日以內에 하되, 市·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②道知事은 市長·郡守가 提出한 施行計劃을 檢討하여 10日以內에 承認하거나 施行計劃의 修正·補完을 命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道知事로부터 施行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公告하여야 하고, 修正·命令을 받은 때에는 이를 修正·補完하여 7日以內에 道知事에게 다시 報告하며, 道知事은 3日以內에 承認하거나

재차修正·補完을 命하여야 한다.

④道知事は 市長·郡守로부터 法 第 5 條第 4 項의 共同施行計劃에 대한調整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調整하여 그 結果를 20 日以内에 當該 市長·郡守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다만, 道知事は 必要한 境遇 20日의 範圍안에서 1回에 限하여 通告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⑤法 第 5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으로 樹立한 施行計劃의 公告는 該當 市長·郡守가 共同으로 한다.

第 7 條 (農工地區의 對象地域) ①市長·郡守가 法 第 8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工地區를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地域을 除外한 地域을 對象으로 하여야 한다.

1. 工業團地가 있는 邑·面
2. 產業基地開發區域中 重化學工業基地가 있는 邑·面
3. 工業配置法에서 規定한 移轉促進地域과 制限整備地域
4.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와 隣接한 邑·面

②市長·郡守가 農工地區를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國土利用計劃과 首都圈整備計劃에 의한 工場用地로서의 適合性 與否
2. 用地擴保의 容易與否
3. 道路·用水·電力·通信施設 等 支援施設 設置의 容易與否
4. 農漁家의 所得增大 效果
5. 農漁村環境에 미치는 影響

第 8 條 (農工地區의 指定節次) ①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農工地區를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農工地區指定에 관한 計劃書를 作成하여 道知事を 거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農工地區의 位置
2. 農工地區의 規模
3. 誘致하고자 하는 業種
4. 農工地區造成에 必要한 資金의 調達計劃과 國家支援의 必要한 事項

5. 造成된 農工地區의 分讓方法
 6. 農工地區 隣接地域의 就業可能人力 現況
 7. 農工地區造成으로 인한 農漁家雇傭 및 所得增大의 期待效果
 8. 農漁村環境에 미치는 影響
- ②經濟企劃院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工地區의 指定에 관한 計劃書를 提出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妥當性 檢討를 위하여 關係部處의 公務員과 專門家로 構成된 作業班을 構成하여 檢討意見을 中央委員會에 提出하게 할 수 있다.

第 9 條 (共同農工地區의 調整) ①道知事が 法 第 8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로부터 共同農工地區의 指定에 대한 調整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調整하여 그 結果를 20 日以內에 當該 市長·郡守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다만, 道知事은 必要한 境遇 20 日의 範圍안에서 1 回에 한하여 通告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共同農工地區의 指定에 대한 調整結果를 通告받은 市長·郡守는 隣近 市長·郡守와 共同으로 이를 調整하여 10 日以內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10 條 (農工地區안에서의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 承認申請 等) ①法 第 10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工地區에 入住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가 提出하는 事業計劃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事業者의 姓名·住所 또는 業體名과 그 代表者
2. 工場建設計劃
 - 가. 着工 및 竣工年月日
 - 나. 基地 및 建築物의 面積
 - 다. 工場配置圖
3. 品目別 生產計劃 및 稼動豫定年月日
4. 資金調達計劃
5. 販賣計劃
6. 雇傭計劃 (熟練勞動力 需給計劃을 包含한다)

7. 用水 및 電力의 使用計劃

8. 公害防止對策

9. 入住方式 (用地買入 또는 貸付)

②法 第 10 條第 3 項에서 “ 2 年以內에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 라
함은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2 年以內에 시제품이 生產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本人에게 시제품生產의 連帶責任을 둘릴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11 條 (農工地區의 造成과 그 支援) ①市·郡은 農工地區를 造成한다.

②政府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農工地區까지의 進込道路 工業用水의 供給
施設 等 公共施設과 農工地區造成을 위한 用地買入 等에 所要되는 經費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市·郡에 支援한다.

第 12 條 (農漁村副業團地의 指定申請) ①法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
村副業團地 (以下 “ 副業團地 ” 라 한다) 的 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
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된 事業計劃書를 市長·郡守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副業團地의 位置 및 代表者 姓名

2. 生產品目

3. 參與者數 및 參與形態

4. 資金使用計劃

5. 生產工程

6. 製品生產 및 販賣計劃

7. 原料調達計劃

8. 農漁家의 雇傭 및 所得增大效果

②市長·郡守가 法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하여 副業團地를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檢討하여야 한다.

1. 農漁家의 雇傭 및 所得增大效果

2. 原料調達可能性

3. 生產製品의 販賣計劃

4. 事業者의 信用狀態

第 13 條 (農水產物加工工場의 指定申請) ①法 第 1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產物加工工場의 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가 提出하는 事業計劃書에는 다음 各號의 包含되어야 한다.

1. 事業者의 姓名·住所
2. 生產品目
3. 工場建設計劃
 - 가. 年次別 建設計劃
 - 나. 竣工年月日 및 生產開始時期
4. 原料調達計劃
5. 輸送 및 販賣計劃
6. 勞動力需給計劃

②市長·郡守가 法 第 18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產物加工工場을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第 12 條第 2 項 各號의 事項을 檢討하여야 한다.

第 14 條(中央委員會의 構成) ①中央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各 1人을 包含한 20 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經濟企劃院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農水產部次官이 되며, 委員은 內務部次官·財務部次官·商工部次官·建設部次官·勞動部次官·交通部次官·山林廳長·水產廳長 및 環境廳長과 農漁村所得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많은 者中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이 委嘱하는 者가 된다.

第 15 條(中央委員會 審議·議決事項) 中央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法 第 3 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樹立·變更 및 同 方針의 施行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2. 法 第 4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3. 法 第 4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4. 法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다른 計劃과의 調和를 위한 調整
5. 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地區의 指定
6. 第 2 條第 7 號의 農漁村地域에 包含되는 市地域의 告示
7. 其他 農漁村所得源의 開發增大를 위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16 條 (實務委員會의 設置) ①中央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미리 檢討하기 위하여 中央委員會 아래에 實務委員會를 둔다.

- ② 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20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③ 委員長은 經濟企劃院次官補가 되고, 委員은 經濟企劃院·內務部·財務部·農水產部·商工部·建設部·勞動部·交通部·山林廳·水產廳 및 環境廳의 長이 指定하는 2級 또는 3級公務員(이에 상당하는 特定職 및 別定職公務員을 包含한다)과 農漁村所得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많은 者中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이 委嘱하는 者가 된다.

第 17 條 (會議의 召集 및 議決定足數) ①中央委員會 및 實務委員會 會議는 該當委員長이 召集하되, 開會 3日前에 議案을 添附하여 各 委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② 中央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③ 中央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各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委員長이 定한다.

第 18 條 (幹事) ①中央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 ② 幹事는 經濟企劃院所屬 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이 任命한다.
- ③ 中央委員會의 幹事는 實務委員會 幹事를 兼한다.
- ④ 幹事는 中央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庶務를 擔當한다.

第 19 條 (手當) 中央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에 出席한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과 第 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家에 대하여는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 20 條 (委嘱된 委員의 任期) 中央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委嘱委員의 任期는 各各 3年으로 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第 3 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 4 條第 3 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1984 年度에 限하여 1984 年 5 月末日까지 所管別 農漁村所得源開發方針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附錄 3

開　　會　　辭

오늘 政府 및 關聯機關의 專門家를 모시고 農漁村所得源開發에 관한 政策協議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真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農業・農漁村發展의 一翼을 담당하기 위하여 7년 전에 설립된 우리研究院은 그동안 農業・農漁村發展에 관한 國內 및 國際세미나를 여러차례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意見을 收斂하고 이를 政府政策에 반영할 수 있도록 努力を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農漁村所得源開發에 대한 政策協議會를 개최하게 된 것은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과 同施行令이 制定, 公布됨으로써 본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農村工業開發의 效率적인 政策方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農村經濟는 지난 20여년 동안의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어 많은 發展을 하였읍니다. 호당 農家所得은 1970년의 25만 5천 원에서 1983년에는 512만 8천 원으로 무려 20배가 늘어 났읍니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大都市 위주의 工業開發로 農村經濟가 상대적으로 低開發됨으로써 農村人口의 급격한 감소와 大都市 특히, 서울의 과도한 膨脹을 불가피하게 하였읍니다. 이와같이 人口 뿐만 아니라 產業・經濟・文化・行政 등의 서울 집중은 地域間・都農間 發展隔差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지속적인 國民經濟成長을 제약하는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2000년대의 정의로운 民主福祉社會建設을 위하여는 모든 國民들이 移村을 하지 않고서도 安定된 일자리와 所得向上 및 自己發展의 機會가 보장되며, 產業社會의 便益과 成長果實의 균등한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地域의 均衡開發과 地方經濟의 活性化가 중요한 政策課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農村工業開發은 農村經濟를 다양화시키고 農家經濟에 대한 안정적인 農外所得增大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地方經濟를 活性化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政策的 重要性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農村工業開發은 단순히

農村地域에 工場만 건설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農村下部構造開發, 農村人力開發, 農業構造調整은 물론 지난 20년 동안 大都市 중심의 工業開發政策에 대한 方向轉換이 선행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農村工業開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政策推進을 위하여는 中央과 地方, 그리고 中央 각 部處間의 相互協助體制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허심탄회한 對話의 광장을 마련하여 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기تاب하고 建設的인 意見交換이 이루어져서 政府가 本格的으로 추진하려는 農漁村所得源開發 政策樹立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政策協議會에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農村經濟研究院에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984. 6. 20.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榮鎮

附錄 4

參 席 者 名 單

座長 金榮鎮（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討 論 參 加 者

【政 府】

金英泰	經濟企劃院 政策調整局長
崔鍾堯	經濟企劃院 產業 1 課長
趙學國	經濟企劃院 農水產豫算擔當官
朴賀植	內務部 새마을企劃擔當
金漢坤	農水產部 農政局長
孫讚俊	農水產部 農村所得課長
李起海	農水產部 企劃豫算事務官
金相根	商工部 農村工業課長
李在春	建設部 地域計劃擔當
朴東淳	江原道 農政課長
金容憲	忠清北道 企劃官
孔秉善	忠清南道 企劃官
柳鳳永	全羅北道 企劃官
趙向元	全羅南道 法務擔當官
南廷德	慶尚北道 農政課長
黃喆坤	慶尚南道 企劃擔當
金玉斗	濟州道 企劃官

【研究機關】

劉 永 噥	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崔 洋 夫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關聯團體】

李 在 吉	中小企業振興工團 綜合計劃室長
朴 金 一	中小企業振興公團 事業 2 部長
徐 元 鎬	農協中央會 調查部 次長
宋 種 益	農漁村開發公社 調查部長
李 敏 秀	水協中央會 調查部 次長
李 炳 浩	새마을運動中央本部 企劃課長
李 信 坤	畜協中央會 調查部長
崔 用 翔	農業振興公社 農業部長
韓 相 昱	農業振興公社 調查部長
洪 瑛 哲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企劃調查部長

農漁村所得源 開發促進方向

1984年 8月 3日 發行

發行處：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錄：1979年 5月 25日 第5-10號

印刷處：新新文化印刷株式會社
752-1436 · 778-0920
